

인권정보자료실
CPb1.13.3



유서사건 총자료집

Ⅲ. 기타자료

유서사건 총자료집

Ⅲ. 기타자료

인권정보자료실
CPb1.13.3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유서사건 총자료집

Ⅲ
기타자료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처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유서사건 총자료집

Ⅲ
기타자료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처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유서사건 총자료집

Ⅲ

(기타자료)

1993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차 례

필적관계 논문

- 자료 마-0-1 문서감식의 연구 / 3
- 자료 마-0-2 불명문자 현출에 대한 연구 / 106
- 자료 마-0-3 한글의 운필형태분류와 회소성에 대한 연구 / 115
- 자료 마-0-4 아라비아 숫자의 운필형태와 개인별 특성에 대한 연구 / 121
- 자료 마-0-5 미성년자 필적에 관한 연구 / 125
- 자료 마-0-6 Electrostatic Detection Apparatus(ESDA)による 不明文字の檢出 / 129
- 자료 마-0-7 Signatures Review and a New View / 138
- 자료 마-0-8 화상처리를 이용한 필자식별에 관한 기초적 연구(일어) / 143
- 자료 마-0-9 화상처리를 이용한 필자식별에 관한 기초적 연구(번역본) / 151

항소심 검증기록 김형영등 뇌물수수사건

- 자료 마-1-1 증제27-1 수사기록 표지 / 163
- 자료 마-1-2 증제27-2 수사기록목록 / 163
- 자료 마-1-3 증제27-3 문화방송보관 테이프 녹취내용 / 165
- 자료 마-1-4 증제27-4 진술조서(조병길) / 166
- 자료 마-1-5 증제27의 5 녹취서(조병길 신찬석·이송운) / 172
- 자료 마-1-6 증제27의 6 녹취서(조병길 / 신찬석·이송운) / 174
- 자료 마-1-7 증제27의 7 녹취서(조병길 / 신찬석) / 182
- 자료 마-1-8 증제27의 8 녹취서(조병길 / 신찬석·이송운) / 193
- 자료 마-1-9 증제27의 9 녹취서(조병길 / 신찬석·이송운) / 197
- 자료 마-1-10 증제27의 10 진술조서(안재국) / 209
- 자료 마-1-11 증제27의 11-1 수사보고 / 214
- 자료 마-1-12 증제27의 11-2 필적감정의뢰 회보 / 214
- 자료 마-1-13 증제27의 11-3 감정서 / 215
- 자료 마-1-14 증제27의 12 피의자 신문조서(이인환) / 240
- 자료 마-1-15 증제27의 13 진술조서(고원배) / 252

자료 마-1-16 증제27의 14 진술조서(신찬석) / 253

자료 마-1-17 증제27의 15 감정서(중앙인영감정원) / 259

자료 마-1-18 증제27의 16 피의자 신문조서(이송운) / 266

자료 마-1-18 증제27의 16 피의자 신문조서(이송운) / 268

자료 마-1-20 증제27의 18 공소장 / 274

자료 마-1-21 증제27의 19 피의자 신문조서(이세용) / 279

자료 마-1-22 증제27의 20 피의자 신문조서(양종석) / 283

자료 마-1-23 증제27의 21 피의자 신문조서(신찬석) / 287

자료 마-1-24 증제27의 22 피의자 신문조서(양승호) / 291

자료 마-1-25 증제27의 23 감정서(김형영) / 298

자료 마-1-26 증제27의 24 감정서(김형영) / 309

자료 마-1-27 증제27의 25 문서분석실 인원조정, 직제개정안(김형영) / 313

자료 마-1-28 증제27의 26 피의자 신문조서 1회(김형영) / 315

자료 마-1-29 증제27의 27 피의자 신문조서 2회(김형영) / 321

자료 마-1-30 증제27의 28 피의자 신문조서 2회(이인환) / 323

자료 마-1-31 증제27의 29 진술조서(양후열) / 325

자료 마-1-32 증제27의 30 피의자 신문조서 3회(이인환) / 327

자료 마-1-33 증제27의 31 감정서(김형영) / 330

자료 마-1-34 증제27의 32 피의자 신문조서 2회(이송운) / 334

자료 마-1-35 증제27의 33 피의자 신문조서 3회(이송운) / 335

자료 마-1-36 증제27의 34 피의자 신문조서 2회(신찬석) / 337

자료 마-1-37 증제27의 35 피의자 신문조서 2회(양종석) / 341

자료 마-1-38 증제27의 36 피의자 신문조서 3회(김형영) / 343

자료 마-1-39 증제27의 37 피의자 신문조서 2회(이세용) / 348

자료 마-1-40 증제27의 38 피의자 신문조서 4회(이인환) / 351

김형영 등 뇌물수수사건 신문모음 / 353

필적 관련 논문

유서관련 기타 자료

진실은 승리한다(회보시작지 1호) / 455

진실은 승리한다(회보시작지 2호) / 471

강기훈 부장을 죽각 석방하라(재판투쟁 속보 준비호) / 479

재판투쟁 속보 1호 / 483

재판투쟁 속보 2호 / 491

재판투쟁 속보 3호 / 493

재판투쟁 속보 4호 / 497

우리가 원하는 것은 건전한 상식의 승리입니다 / 501

신문자료 모음 / 537

‘명동신화’ 사라지는가/언론 상업주의에 부추겨진 필적공방(시사저널, 1991.6.6.) / 875

한국판 트레뤼스사건, 유서공방의 진실(월간 「말」, 1991.7.) / 883

지적 선정주의를 파는 지식인 스타들(월간 「말」, 1991.7.) / 889

강기훈의 옥중편지/“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월간 「말」, 1992.4.) / 891

강기훈을 유죄로 만든 판검사들(월간 「말」, 1992.9.) / 891

‘유서대필사건’ 재판기/트레뤼스의 무죄와 강기훈의 유죄?(경제정의, 1992.3·4.) / 897

강기훈씨 ‘유서대필조작사건’의 전모(월간 「인권」, 1992.4.) / 903

나의 ‘유서사건’ 1년(서준식, 살림, 1992.6.) / 910

이 나라의 인권 자화상, 강기훈(서준식, 북음과 상황, 1992.10.) / 923

SOUTH KOREA/Prisoner of Conscience Kang Ki-hun(amnesty international, 1993.1.) / 931

* 찾아보기 / 937

문서감식의 연구

문서감식의 연구

文書鑑識의 研究

鄭昌鎔 著

集賢社

目次

文書鑑識

序文

第1篇 筆蹟鑑定

제 1 장 筆蹟의 個人性1

1 절 個個文字에 있어서의 特徵2

A. 文字의 크기2 B. 容 體3

C. 墨色의 整頓3 D. 文字의 音기3

E. 文字의 形態4 F. 文字의 傾斜4

G. 文字의 震動5 H. 筆 體5

2 절 文書全體로서의 特徵5

A 行5 B. 文字의 配列6

C 行의 方向6 D. 假字, 脫字의 有無7

E. 文字의 抹消, 挿入8 F. 筆 勢9

제 2 장 筆蹟의 變化性10

1 절 模倣과 練習10

2 절 感情狀態12

3 절 遺傳的影響14

4 절 精神病15

5 절 催眠中の 暗示16

6 절 年 齡17

제 3 장 筆蹟鑑識法19

1 절 統計的方法20

A. 筆蹟의 特徵21 B. 字劃構成의 特徵22

2

2 절 幾何學的方法25

제 4 장 鑑定資料의 適性27

제 5 장 詐欺文書29

1 절 削消文書의 檢査29

A. 擴大鏡에 의한 檢査29 B. 透視에 의한 檢査30

C. 削消에 의한 文字의 滲出30 D. 塗布物質의 檢査30

E. 文字의 痕跡檢査31 F. 透視攝影에 의한 檢査31

2 절 其他變造文書의 檢査32

A. 變造의 方法33 B. 檢査法35

제 6 장 偽 筆38

1 절 轉寫二筆의 檢査38

2 절 變體筆蹟의 檢査39

제 7 장 炭化文字의 檢査47

제 8 장 紙質檢査49

1 절 一般의 檢査49

2 절 物理的檢査50

A. 重 量50 B. 종이두께50

C. 強度 및 伸度50

3 절 化學的檢査50

A. 사이즈檢査50 B. 澱粉檢査50

4 절 顯微鏡的纖維檢査51

제 9 장 文書作成時期的 鑑別52

1 절 墨에 대하여53

A. 墨文字의 作成時期53

2 절 잉크에 대하여54

A. 잉크의 檢査55 B. 잉크文字의 作成時期55

第2篇 印影鑑定

- 제 1 장 印影의 偽造手法62
 - 1 절 印鑑盜用.....62
 - 2 절 印鑑手刻.....62
 - 3 절 凸版偽造.....62
 - 4 절 印影轉寫.....63
 - 5 절 寫真轉寫.....64
 - 6 절 原紙에 의한 偽造.....64
 - 7 절 印影描寫.....65
- 제 2 장 印影의 變化性66
 - 1 절 押捺壓의 影響66
 - 2 절 印朱의 影響66
 - 3 절 押捺臺의 影響67
 - 4 절 押捺用紙의 影響67
- 제 3 장 印影鑑識法68
 - 1 절 比較顯微鏡에 의한 方法.....68
 - 2 절 擴大投影器에 의한 檢査.....69
 - 3 절 擴大原板에 의한 透視的檢査.....69
 - 4 절 擴大寫真에 의한 檢査.....69
 - 5 절 幾何學的計測法.....70
 - A. 作圖法.....70
 - B. 透視方眼板에 의한 方法.....73
- 제 4 장 沒入印影의 顯出方法75
 - 1 절 金澤式 顯出方法75
 - 2 절 宮地式 顯出方法77

- 제 5 장 印刷活字78
 - 1 절 印刷活字의 種類78
 - 2 절 印刷의 種類78
 - A. 凸版印刷.....79
 - B. 凹版印刷79
 - C. 平版印刷.....79
 - 3 절 印刷活字의 鑑識80
- 제 6 장 타이프라이타文字.....81
 - 1 절 타이프라이타의 種類81
 - 2 절 타이프라이타의 型과 容量.....81
 - 3 절 타이프라이타의 機構82
 - 4 절 타이프라이타文字의 鑑識82
 - A. 印字의 圖案 및 크기83
 - B. 印字의 配列.....83
- 제 7 장 不明文字86
 - 1 절 凹文字(押痕跡文字).....86
 - 2 절 隱顯잉크文字.....88
- 제 8 장 印朱印影의 抹消와 鑑別91
 - 1 절 抹 消.....91
 - 2 절 鑑 別.....91
- 제 9 장 印影印朱의 鑑別93
 - 1 절 印朱의 種類93
 - 2 절 印朱의 顔料94
 - 3 절 印朱의 製法94
 - 4 절 印朱의 鑑別95
- 제 10 장 有價證券의 檢査96

제 1 편 筆蹟鑑定

제 1 장 筆蹟의 個人性

古代文明民族은 文字를 具有하여 諸般形式의 文書가 作成되고 本人의 筆蹟이라 하는 것이 여러가지 의미에 있어서 중요한 관계를 招來한 것이다. 특히 歷史的인 文書, 特定の 事實에 關한 文書, 犯罪과 關係 있는 文書 등에 있어서 個人의 筆蹟은 各筆者의 個人性을 表示한다는 點에서 重要한 意味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個人性은 또 個人識別에도 중요한 參考資料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筆蹟은 活字 처럼 언제나 型態가 固定되어 있지 않으며 여러 條件에 따라 풍부한 變化性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經驗하는 바이다. 그러나 이 變化性인 筆蹟中에도 비교적 不變의이며 固有性인 部分이 認定된다고 하는 사실은 看過할 수 없으며 筆蹟과 個人性의 關係는 實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筆蹟의 個人性을 주의하여 觀察하면 筆蹟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特徵은 例컨대 楷書, 行書, 草書의 文字의 書體形式에 따라 다르며 또 文字의 構成性質 例컨대 直線, 角, 點이 主로 成立되어 있는 文字 등에 따라 현저히 相違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特徵을 어느 나라의 어떤 文字나 書體에 있어서도 하나의 標準點만에 依據하여 規律한다는 것은 사실상 困難한 것이다. 그러나 從來로부터 筆蹟에 關한 研究者는 筆蹟이 갖는 個人性의 공통점에 대하여 研究調査한 結果, 그 주요한 點을 대략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2 제 1 편 제 1 장 筆蹟의 個人性

1 절 個個文字에 있어서의 特徵

먼저 注意하여야 할 것은 文書에 現出되어 있는 個個의 文字에 있어서의 特徵인 것이다.

A. 文字의 크기

이것은 文字의 形의 大小를 主로 말하는 것으로 즉 同一紙面에 記載되어 있으며, 보통이면 同一의 크기로 作成되어 있어야 하는 경우에 大文字, 小文字가 混雜하게 羅列되어 대단히 不調和狀態로 成立되어 있다든지 또는 이에 반하여 調和를 이루고 정돈된 크기로 되어 있다든지, 各行의 文字 크기는 비교적 정돈되어 있지만 行과 行과를 비교하여 보면 크기에 현저한 差異가 있다든지 또는 各行의 文字의 크기가 정돈되어 있든가 혹은 初行은 文字가 크며, 점차로 終行에 이르러서는 작아져 있다든지 또 文字의 크기에 있어서의 不調和狀態가 偶然하다든지, 裝飾的으로 그렇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어느 것을 막론하고 특별한 經驗 없이 누구나 容易하게 識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筆蹟傾向은 個人마다 대체로 一定한 것으로서 특히 長文으로 記載作成되어 있는 경우에 한층 明瞭히 顯出되는 것이다. 다음에 文書에 表示되어 있는 文字의 크기는 정돈되어 있지만 全體로서는 항상 가늘게 쓰는 傾向인 사람과 반대로 항상 큰 文字로 쓰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原來 文書의 性質에도 依據하지만 이러한 傾向이 있는 사람은 文書中에 있는 文字의 多少에 의하여 반드시 左右되지 않는다. 例컨대 細文字로 쓰는 傾向인 사람은 端書의 文字가 작다고 하여 大文字로 쓰지 않고 역시 細字로 作成하여 餘白을 남겨두는 것이 보통인 것이다. 대략 細心, 緻密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細文字를 쓰고 快活 豪放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文字를 크게 쓴다고 하는 것은 俗言이지만 어느 程度 妙를 얻은 사실인 것이다.

1절 個個文字에 있어서의 特徵 3

B. 書體

이것은 歐美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使用되고 있는 文字 보다도 우리나라 및 中國, 日本等地에 있어서 使用하고 있는 漢文字에 특히 주의하여야 할 성질인 것이다.

즉 文書에 表示되어 있는 各文字가 ①楷書, 行書, 草書 중의 어느 書體로서 作成되어 있다 ②混合錯雜하게 作成되어 있다 ③個個의 文字에 있어서의 특별히 현저한 變化가 認見되지 않지만 行의 進行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變化를 야기하여 文書全體로 볼 때는 調和性을 잃은 感을 顯出한다 ④首尾一貫으로 書體가 정돈되어 있다하는 것도 各人의 個人性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C. 墨色の 整頓

文書面에 現出되어 있는 文字의 墨色이 裝飾的으로 技巧的인 變化를 維持하느냐, 拙劣한 狀態로 심한 變化를 惹起하고 있느냐, 기타 墨色の 濃淡이 대단히 無秩序하게 表現되어 있느냐의 興否等도 個人性을 認識하는데 중요한 資料가 되는 것이다.

D. 文字의 굵기

文字를 쓸 때에 用筆의 紙面에 對한 強弱과 用筆축(끝)에 따라 여러가지로 差異點을 顯出하는데 歐美의 文字와 漢文字간에는 어느 정도의 相異되는 點이 있지만 漢文字에 있어서 우선 文字의 縱線이 비교적 굵은 경우와 橫線이 굵은 경우가 있으며 다음에는 文字의 全體로서 굵은 경우와 가는 경우가 있고 또한 文書中에 表示되어 있는 文字의 굵기가 대단히 均一한 경우와 均一치 않은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點은 文字作成時에 使用する 用筆이 굵고 가늘고, 새로운 것, 오래된 것 등에 따라서도 多少의 相違되는 結果를 惹起하지만 個個人의 用筆의 使用狀態에서 自然히 個人性을 나타내게 된다.

4 제1편 제1장 筆蹟의 個人性

예컨대 文字의 橫線側이 굵다든지 하는 경향이 대단히 明瞭하게 表現되는 것이다.

기타 하나의 文章全體 또는 하나의 線全部의 굵고 가는 問題가 아니고 하나의 劃을 쓸 때에 惹起되는 굵기가 여러가지로 相違되는 경우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주로 漢文字의 경우로서 하나의 線을 劃하는데 보통 이상의 굵기라든가 가늘기를 달리하는 것이다.

예컨대 文字의 처음 劃에 대하여 用筆을 加한 경우에 顯著히 굵게 쓰고, 다음은 보통 또는 보통 이상으로 가늘게 쓴다든지 또는 終筆하는 個所, 跳筆하는 部分, 點에 있어서 甚하게 굵게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때로는 현저히 表示되며 文書全體에 明瞭한 特徵을 附與할 뿐만 아니라 個人差를 明示하는 것이다. 이것은 毛筆筆蹟에 현저히 表現되는 것이다.

E. 文字의 形態

같은 直線, 角이 많은 性質의 文字라도 사람에 따라 甚하게 直線, 角을 誇張하는 경향인 사람에 反하여 둥글게 쓰는 경향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둥글게 쓰는 性質의 文字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심리 모(角)나게 쓰는 경우와 지나치게 둥글게 즉 誇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또 文字를 일반적으로 橫으로 길게 쓰는 경향인 사람과 縱으로 길게 쓰는 경향인 사람이 있는 것이다. 또 같은 네모(四角)劃을 쓰는 데도 上部를 比較的 狹小하게 쓰는 사람과 下部를 狹小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혹은 圓形 또는 橢圓形에 類似하게 쓴다든지 또는 上部를 모(角)나게 쓰는 경우와 下部를 모나게 쓰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點도 個人의 筆癖에 따라 대략 一定한 것이다.

F. 文字의 傾斜

이것은 運筆의 方向을 表示하는 것으로 個個人의 팔(腕), 손(手), 指等

2절 文書全體로서의 特徵 5

의 대단히 微細한 運動에 의하여, 여러가지 個人差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縱線과 橫線의 傾度는 甚한 個人差를 나타내는 것으로 文字全體가 左側 또는 右側으로 傾斜되어 있는 경우와 主로 縱線 또는 橫線만이 一方으로 傾斜되어 文字全體가 傾斜되려 있는 경우는 대략 文字를 쓸 때에 紙面을 傾斜로 하여 쓰는 때문인 것이다.

또 文字의 劃이 傾斜지는 한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것에 用筆을 어떤 方向으로 跳躍해서 終筆하는 傾斜가 있는데, 이것은 歐美의 文字에도 認見되지만 漢文字에 있어서 특히 이 점이 많은 것이다.

가령 右方向으로 跳躍하는 方法에도 橫直線으로 또는 甚하게 上向 혹은 下向하는 경우 등이 있어 상당히 細密한 文字에 있어서도 個人의 筆癖을 表示하는 것이다.

G. 文字의 震動

이것은 일반적으로 筆蹟 전체에 공통적인 問題는 아니지만 心身에 특수한 異常이 있는 사람, 例컨대 酒精中毒, 神經痛에 罹患되어 있는 사람에 있어서 尙望 注目할 특징이 있는 것이다.

H. 筆 滯

이것은 하나의 文字를 쓰는데도 運筆의 狀態가 均滑치 못하고 어떤 個所 마다 잠간 運筆의 滴滯를 하는 경우이다.

2절 文書全體로서의 特徵

다음은 個個의 文字에 表된 특징이 아니고 個個의 文字가 連續하여 하나의 文書가 成立된 경우에 있어서의 全體上의 여러가지 특징인 것이다.

A. 行

이것은 橫書와 縱書에 따라 어느 정도 그 관계를 달리하는 것이다.

6 제1편 제1장 筆蹟의 個人性

개괄적으로 論하면 各行間의 均衡인 것이다. 즉 各行의 方向이 一定한가, 또는 그렇지 않은가로서 例컨대 各行의 間隔이 一定한 경우와 넓다든지, 혹은 좁(狹小)고 不規則한 경우를 말한다.

이것도 個個人에 따라 대략 一定한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단, 文書가 상당히 長文인 경우에는 처음에는 行이 대단히 規則的으로 되어있지만 行의 進行에 따라 점차로 行이 一方으로 傾斜되어 各行間의 間隔이 甚히 不規則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例컨대 性急한 사람, 疎忽한 사람의 文書에는 이러한 不規則的인 面이 보이며 또 下行이 傾斜하는 點은 대체적으로 항상 一定한 形式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B. 文字의 配列

이것은 各行을 構成하고 있는 많은 文字가 一定하지 않고 여러가지 方向으로 약간씩 傾斜져 있든지 行이 直行하지 않고 가령 橫書인 경우에는 上下로, 縱書인 경우에는 左右로 文字가 出入하여 記載되어 있는 경우이다.

C. 行의 方向

이것은 全體의 行이 바른 方向으로 成立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경우이다.

대체로 個個人의 筆蹟은 一定한 경향을 갖고 있는 것이다. 물론 縱書와 橫書인 경우 약간 相異되는 관계가 있는 것은 말할나위도 없지만 個個의 文字가 傾斜 또는 正立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즉 個個의 文字는 어느 것이나 규칙적이며 一定한 方向으로 傾斜하고 있지만 行으로서 觀察할 때는 傾斜되지 않고 精確한 方向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또 個個의 文字는 傾斜되지 않고 精確한 位置를 占하고 있지만 行으로서 觀察할 때에는 대단히 甚한 傾斜를 나타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2절 文書全體로서의 特徵 7

그러나, 個個의 文字가 精確한 位置를 占할 때 行도 精確한 方向을 劃하며 個個의 文字가 甚히 傾斜되어 있는 경우에 行도 역시 傾斜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行의 傾斜되는 習癖이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注意하여 精確히 쓰지만, 점차적으로 傾斜되어 가는 것이 常例인 것이다.

이와 같이 行이 傾斜가 되느냐, 안되느냐는 主로 姿勢, 用筆의 取扱, 紙面의 位置等으로서 決定되므로 修鍊 없이는 行의 傾斜를 완전히 矯正할 수는 없는 것이다.

D. 誤字, 脫字의 有無

이것은 主로 各作成者(筆者)의 教育程度 및 精神狀態에 基因하는 것으로 嚴密한 의미에서는 筆蹟 그 自體로서는 약간 別個의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 또한 一旦 個人性을 表示하는 것이다. 이것은 一字一語를 表示한 文書에서는 명료치 않고 다수의 文字가 記載되어 있는 文書 가령 證書, 書簡, 投書等에 있어서 注意하여야 할 條件의 하나인 것이다.

이와 같이 誤字가 個人性을 表示한 事件實例로서 다음과 같은 殊棼 事緣을 解決한 적이 있다.

1965년 화사한 봄의 일이었다. S署管轄의 李桂順(假名)嬢은 어린 남동생을 거느리고 열일곱살의 연약한 몸으로 근근히 生活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래도 6·25前에는 良家의 貴한 딸로서 裕福한 環境에서 자랐다.

천만 뜻밖의 動亂으로 아버지는 拉北 당하고 어머니 마저 心火病 끝에 不歸의 客이 되니 오로지 두 男妹만이 남게 되었다.

여기에다 雪上加霜으로 살고 있는 집마저 歸屬財產(敵產家屋)의 緣故者에 拂下한다는 公告를 알지 못한 채 期日을 지나쳐버렸던 것이다.

이 무렵 아버지의 옛 親舊이었던 姜達(假名)이란 사람이 찾아와서 期限은 지났지만 管財局에 아는 親舊가 있으니 救濟를 周旋하겠다고 나섰던 것이다. 桂順嬢은 마치 돌아가신 아버지를 相逢한 듯 반가움과 고마

8 제1권 제1장 筆蹟의 個人性

운 마음으로 父母를 여윈 슬픔도 있고 再生의 希望에 사무쳤다.

父母와 같던 아버지의 親舊 姜達이 惡辣한 野望에 矢구쳐 있었던 것을 少女는 꿈에도 생각치 못했던 것이다.

姜達은 그의 天性이 好色인데다 野獸의인 變態性慾을 가진 者로서 李嬢의 貞操를 빼앗고 말았다. 집問題의 解決과 家長의인 立場에서 弟生을 扶養하겠다는 一念에서 내어린 少女는 生命과도 바꿀 수 없는 貞操를 버린 것이다.

그러나 급기야는 살던 집마저 빼앗긴 것을 안 桂順嬢은 번민 끝에 애절한 遺書 한 통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버렸다.

그리하여 곧 이 가엾은 少女의 죽음은 司直當局의 搜查를 받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 野獸 같은 사나이 姜達은 容疑者로 檢舉되었으나 전혀 그런 사실이 없노라고 우길 뿐더러 遺書도 謀陷하기 爲하여 만들어진 것이지 결코 李嬢의 筆蹟이 아니라고 대들었다. 그러므로 遺書의 主人公은 과연 李嬢이나 아니냐를 밝히기 爲하여 결국 鑑識의 대상이 되었다. 즉 鑑定資料는 李嬢의 平素의 筆蹟(某女高在學時)과 遺書로서 內容文字는 舉皆가 “한글”로 漢字는 三, 四種 點綴되어 있었다. 특히 興味 있는 것은 漢字構成字劃에 있어서 「年」字에서는 第四劃, 「鄭」字에서는 第八劃을 꼭 脫劃하여 쓰는 點이었다. 이 誤字 특징은 또한 餘他的 “한글” 筆蹟檢査와 아울러 李嬢의 遺書임이 明白하여지므로서 드디어 姜達은 司直의 膺懲를 받게 되었던 것이다.

E. 文字의 抹消, 挿入

不必要한 文字를 抹消할 때 간단히 一 또는 二, 三의 直線으로서 抹消表示를 하는 사람이 있으며 5, 6個以上の 直線을 劃하며 性急히 抹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或은 한字 한字를 圓形에 가까운 曲線으로 抹消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不用한 文字가 보이지 않을 때 까지 徹頭徹尾 黑漆을 하여 抹消하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抹消의 方法도 대략 個人에 따라 一定한 것이다.

2절 文書全體로서의 特徵 9

F. 筆 勢

이것은 個個의 文字에 있어서도 볼 수 있는 특징이나 특히 文字가 連結된 경우에는 비교적 명료하게 나타나는 것으로서 筆蹟의 個人性을 顯示하는 것이다. 그러나 上述의 各種의 條件과 같이 구체적으로 論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이다. 그것은 筆勢의 如何는 대단히 微妙한 點의 差異에서 發生하므로 그 현저한 兩極端인 것을 비교할 때는 누구든지 쉽게 識別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렇게 甚한 程度의 差異가 認見되는 것은 아니다. 後述할 僞筆 즉 他人의 筆蹟을 模倣한 文筆인 경우에는 이 筆勢는 等한시 할 수 없는 條件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以上の 筆蹟의 個人性에 대하여 論한 것은 어느 것이든, 어떤 筆蹟을 個人識別에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後述의 筆蹟鑑識法에서 詳論하는 구체적 方法에 相扶함으로써 그 個人性은 점차적으로 推知되고 究明되어갈 것이다.

제 2 장 筆蹟의 變化性

前述한 筆蹟의 個人性과 變化性은 相對의 관계이며 원래 筆蹟의 變化性은 通俗의으로 認定되어 온 周知의 事實이나, 이 點에 대하여 筆蹟鑑識家는 恒時 研究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그 重要한 點을 論하던 대략 다음과 같이 分類된다.

1절 模倣과 練習

模倣과 練習은 우리의 精神上 또는 身體上의 活動에 대단히 密接한 關係를 가지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특히 筆蹟과 같이 一見之下에 분명히 관찰되며 비교할 수 있는 것에 있어서는 일층 현저한 영향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努力, 模倣, 練習을 反復함으로써 어떤 筆蹟에 接近, 類似性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例로서 遺傳的 素質을 달리함에도 不拘하고 글씨본(習字敎本)의 文字에 類似하다는 것을 보아도 推知할 수가 있는 것이다. 뉴욕의 어느 中學校에서 約 50名(16~20歲)의 男女學生들에게 何等의 注意도 주지 않고 또 무슨 目的으로 文字를 書取한다든지 하는 一言半句 조차의 이야기도 없이 글씨본의 한 行의 文章을 書取하여 그 全體의 筆蹟을 觀察調査하여 본 결과 대단히 甚한 類似性을 나타내고 그중 一部는 어느 누가 觀察하여도 곧 그 글씨가 別異의 것이라고 斷定키 困難한 筆蹟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同一人(같은 사람)의 筆蹟이라고 하여도 거의 疑心이 나지 않을 정도로 類似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이 야기되는 것은 日常 같은 글씨본에 依하여 練

1절 模倣과 練習 11

첩하였기 때문이다. 또 發聲이 努力과 練習에 依하여 어떤 聲帶에 酷似함을 發揮하는 것과 같이 筆蹟도 처음에는 拙筆이지만 努力해서 練習한 結果 그 글씨본으로 어떤 사람의 文字를 習得하여 나중에는 그와 같은 達筆인 文字를 쓰게 된다는 것을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다.

어떤 惡意에서 特定인의 筆蹟을 模倣한 결과 그 特定인의 眞筆로 誤認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본인 自身이 관찰하여도 識別에 곤란을 야기하는 事例가 往往 있다는 것은 練習과 더불어 模倣이 筆蹟을 變化시키는 데 있어서 지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立證하는 것이다.

一部の 論者は 長男의 筆蹟이 그 家族內에서 특히 아버지의 筆蹟에 類似하다는 것이다. 즉 長男에 대하여는 어느 家庭의 아버지이고 특히 注意하여 養育하는 것이다.

따라서 文字를 쓰는 方法과 練習과 같은 것도 특히 아버지로부터 監督指導를 받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長男의 筆蹟은 그 兄弟의 어느 누구 보다도 자연 아버지의 筆蹟에 유사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模倣과 練習은 어느 사람의 筆蹟이라도 어떤 時期와 다른 時期와의 筆蹟을 비교하여 볼 때 그 相異의 程度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筆蹟은 마치 變態心理現象에서 論하는 人格變換과 相類한 意味로 一生中에 全然 相違된 個人性을 가진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는 筆蹟을 模倣한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人格, 品行을 敬慕하여 그것을 模倣하려고 修練하는 사람이 자연적으로 筆蹟도 유사하게 되었다는 것을 소위 無意識의 模倣으로 因한 유사라고 말하며, 筆蹟의 경우만이 아니고 기타 많은 心身의 活動에 있어서 항상 볼 수 있는 事實인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筆蹟이 特定인의 筆蹟에 類似하고 있다는 것은 반드시 故意的으로 練習, 努力한 模倣의 結果로만 斷定할 수 없는 것이다.

12 제 1면 제 2장 筆蹟의 變化性

2절 感情狀態

古來로 “筆蹟은 心寫한다”는 말과 같이 感情狀態가 筆蹟에 미치는 영향 또한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緊張, 興奮, 恐怖, 不安 등은 筆蹟에 대단히 甚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즉 平素에는 대단히 柔和한 書體를 쓰는 사람이 憤怒하였을 때에는 自己自身の 그 書體도 粗放한 筆蹟이 된다는가 平穩한 感情에서 作成한 文書가 역시 정돈된 筆蹟임에 反하여 어떤 感情에 支配되어 不安한 때 作成된 文書(例컨대 書簡)는 甚히 그 筆蹟이 亂筆로 정돈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經驗하는 바이다.

또 犯罪者의 筆蹟이라도 犯罪가 豫想대로 成功하고 있을 때와 計劃을 세운 것이 전부 失敗로 돌아갔을 때의 그 사이에는 우연히도 明白한 相違點이 認見되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이 한 사람의 人相, 容貌上에 自然히 現出되는 것을 보아도 首肯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程度의 感情狀態에 있을 때 그 사람의 筆蹟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 가는 興味 있고 또한 重要한 문제이나 과학적 研究에 依한 구체적 事實을 든다는 것은 困難한 것이다.

그러나 一部の 論者は 개괄적인 關係로서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예컨대 悲哀狀態에서는 보통 平素의 筆蹟 보다 文字가 작아지며 運筆面에 있어서도 用筆의 힘이 弱하며 文字 전체가 어느 程度 萎縮되는 傾向을 表示한다는 것이다.

이에 反하여 憤怒의 情이 強할 때에는 普通 때 보다도 文字가 크며, 運筆面에도 用筆의 힘이 強하며 點, 劃이 굵고 曲線인 部分이 모(角)가 나게 表現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물론 이러한 경향은 個個人的 性質과 筆體의 練習에 따라 어느 사람이나 다 現出된다고 할 수 없으나 感情이 敏感한 사람이나 筆體에 대한 練習이 不足한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變化를 招來하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感情狀態가 항상 반복되어 經驗이 거듭된 경우에는 그것은 벌써 그 사람의 筆蹟上에 하나의 固定된 形式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特殊한 感情狀態가 그 사람의 筆蹟上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歷史上 가장 興味 있는 것으로는 나폴레옹 一世의 署名에 있어서의 筆蹟의 變遷인 것이다.

즉 나폴레옹 一世의 署名의 筆蹟은 그 一代에 있어서의 經歷과 적지 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 盛衰의 運命과 같이 극히 주목할 變化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例컨대 아우스델릿즈 勝利後에 署名한 보통의 筆蹟과 라이프치히에 있어서의 大敗後에 署名한 筆蹟과를 비교하여 보면 그간에 一見 현저한 相違가 있는 것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盛運時의 署名은 橫書로 한 署名의 末尾 n이 비교적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경향임에 反하여 悲運時의 署名은 末尾가 밑으로 처지는 傾向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모스크코市街에 入城한 後 또는 露西亞를 退却할 때에 署名한 것은 현저하게 末尾 n이 밑으로 처져 있으며 센트헤레나의 流配中에 署名한 것은 보다 심하게 아래 쪽이 처져있는 것이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나폴레옹 一世의 그때 그때의 感情狀態如何에 의한 것으로서 누가 觀察하여도 一目瞭然한 것이다.

이러한 事實的 觀察로서 사람의 一代에 있어서의 運命의 急變이라든가, 시시각각에 있어서의 심한 感情의 變化는 筆蹟上에 적지 않은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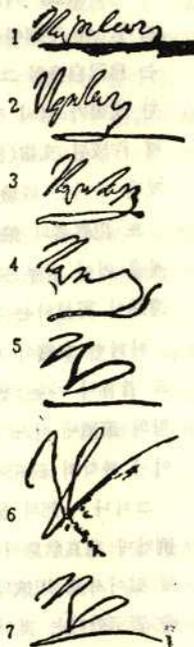


그림 1. 나폴레옹 一世의 署名變化

1. 皇帝即位後
2. 아우스델릿즈勝利後
3. 1806年の 戰役後
4. 모스크코入城後
5. 露國敗逃後
6. 라이프치히 大敗後
7. 皇帝退位前

14 제 1편 제 2장 筆蹟의 變化性

향을 미치며 경우에 따라서는 同一한 사람의 筆蹟이라도 他人의 筆蹟으로 認定되기 쉽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點은 筆蹟研究의 흥미있는 문제가 되며 특히 筆蹟이 個人識別의 資料로 되는 경우에는 주의하여야 할 點이다.

3절 遺傳的 影響

筆蹟의 類似性에 대하여 미첼(Mitscher)은 遺傳的 影響이 심하게 作用한다고 했다.

실제로 우리의 多數의 親子의 筆蹟 또는 兄弟姉妹의 筆蹟을 比較觀察하여 보면 否定할 수 없는 사실도 있는 것이다.

또한 미첼은 특히 男兒의 筆蹟은 父親의 筆蹟을 닮고 女兒는 母親의 筆蹟을 많이 닮는다는 것이다.

소위 이것을 平行遺傳的 結果라고 설명을 하나 筆蹟과 같이 複雜한 心身活動의 軌跡이 단순히 明白하게 父系, 母系로 區別되어 遺傳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疑問이 되며 생각할 문제인 것이다.

그러나, 일부 論者는 少年時代로부터 別居하고 있던 男兒의 筆蹟 보다는 數年間 同居한 夫婦의 筆蹟에 있어서 오히려 類似點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遺傳的 影響 보다 模倣과 練習에 그 主된 類似性의 原因을 認定하는 것이 穩當할 것이다. 물론 筆蹟에 있어서의 類似性 문제에 관하여, 일부의 論者는 發聲과 같이 대단히 미묘한 作用이 近親間에 혹사한 사실을 例로 들어 筆蹟과 같이 微細한 筋肉運動에 依한 作用이 酷似한 것은 당연 遺傳的 影響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上述한 바와 같이 發聲이 模倣과 練習에 依하여 대단히 혹사해지는 것을 "아는 우리는 筆蹟에 있어서의 혹사를 과연 어느 정도 까지 純粹한 遺傳的 影響이나를 判定한다는 것도 또한 곤란한 것이다.

左右間 筆蹟의 變化性으로서의 遺傳的 影響에 관하여는 注意하여야

할 것이다.

4절 精神病

알콜中毒, 神經痛, 精神病等으로 因하여 心身活動의 中樞가 混亂되고 이로 因하여 健全한 活動을 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인 것이나, 이것이 筆蹟上에 미치는 영향 또한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미치는 方法도 各樣各色으로 一律의으로 論할 수는 없으나 요컨대 筋肉活動의 管理를 喪失한 자는 年老者의 필적에서 왕왕 볼 수 있는 痲(震)는 文字로 作筆하는 것이다. 이것은 痲痺의 症狀이 있는 사람의 筆蹟인 것이다.



그림 2. 筆蹟變化

- (a) 健康時의 筆蹟
(b) 알콜中毒時의 筆蹟

다음에 腦의 어떤 부분이 마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왕왕 文字의 일부 또는 同一文字를 여러번 반복해서 쓰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전연 무의미한 것을 連續하여 쓰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現象은 모두 精神病에 基因하는 것으로 筆蹟上에 미치는 심한 變化이지만 그렇게 昂進的 變化가 없어도 精神病에 罹患된 사람은 거의 精神病 以前의 筆蹟과는 어느 정도 相違된 筆蹟을 나타냄을 認見할 수 있는 것이다.

또 大腦의 한면 半球가 마비되었기 때문에 다른면의 半球로서 諸般事를 보지 않으면 안되게 된 患者는 왕왕 文字를 반대로 쓴다고 한다. 즉 右手가 마비되면 左手로서 代筆하게 되며 文字도 左文字를 쓰게 된다고 하는 例이다. 따라서 이러한 狀態下에서 筆蹟이 健康時의 筆蹟과 심한 相異를 야기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病에 걸린 것을 豫知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연 他人의 筆蹟이라고 斷定할 餘려가 있는 것은 또한 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그림 3 은 獨逸의 詩人 켈델린의 健康時에 自筆한 署名(a)과 精神病에 걸렸을 때의 署名(b)으로서 對照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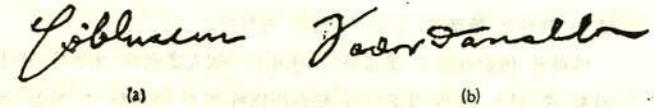


그림 3. 켈델린의 署名變化
(a) 健康時의 署名 (b) 精神病에 걸렸을 때의 署名

5절 催眠中의 暗示

催眠術에 의거한 경우로서 특히 충분히 깊은 催眠狀態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被術者는 전혀 施術者의 暗示에 따라 活動하고 自己의 人格을 喪失하며 미세한 心身の 活動 까지 기민한 暗示의 영향을 받는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催眠現象을 研究한 많은 學者에 의하여 많은 材料가 提供되어 있는 것이다.

롬브로스소(Lombrosso)와 리셰(Richet)가 實驗한 바에 의하면 被術者는 暗示한 사람의 性質에 相應되는 것과 같은 筆蹟을 나타낸다고 한다. 例컨대 히스테리性 婦인이 어린이가 되었다고 暗示되면 마치 어린이와 같은 筆蹟을 現出하였다고 한다. 또 프라이엘(Preyer)의 實驗한 바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催眠狀態에서의 筆蹟이 오히려 平常時의 筆蹟 보다 達筆인 경우가 있었으며 또 반대로 어떤 被術者는 催眠狀態에서의 筆蹟이 마치 어린이에 글씨 모양 拙筆인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또 興味 있는 것으로는 오스트리아의 某學者는 이 被驗者로서 약 1時間 동안에 어린이, 나폴레옹 一世, 學者, 70歲의 老人等의 4種類로 나누어 性質이 相違되는 사람으로 暗示되어 그때 그때에 採取한 筆蹟을 비교하여 관찰한 結果 나폴레옹 一世라고 暗示되었을 때와 70歲의 老人이라고 暗示되었을 때와의 筆蹟은 그 文字의 性質이 대단히 相違할 뿐만 아니라 그 文字의 作成方法도 一見 相違된 他人의 筆蹟으로 밖에 볼 수 없었다 한다.

이와 같이 催眠狀態에 있어서의 筆蹟이 그 사람의 本來의 필적과 현

6월 年 齡 17

저희 다르게 되어 現出하기 때문에 暗示의 方法에 따라서는 특수한 形式을 取하는 筆蹟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催眠狀態와 筆蹟과의 관계는 個人識別的 경우에 있어서 동한 시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나 犯罪行爲에 직접 관계할 수 있는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비안키(Bianchi)와 같은 사람은 다음과 같이 論하고 있다.

히스테리性 婦人은 그 特性으로서 無名의 편지를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婦人은 또 催眠中의 暗示에도 敏感하다고 한다. 男子에 있어서는 外界의 刺戟에 支配되기 쉬운 사람과 輕信性이 있는 사람이 히스테리性 婦人과 같이 暗示性이 強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사실상으로 催眠狀態에 있지 않아도 外部로부터의 刺戟에 의하여 그때 그때의 精神狀態가 動搖되어 자연 그것이 筆蹟上에도 영향을 招來한다는 것이다.

6월 年 齡

筆蹟의 變化性으로서 年齡은 원래 個人의 筆蹟의 特有性으로 인하여 老年에 들어서도 대단히 젊고 活氣 있는 筆蹟을 나타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青年인데도 반대로 老年氣의 筆蹟인 사람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特殊한 경우로서 항상 習字工夫를 하고 있다든가 氣分이 早熟하다든가 또는 元氣旺盛하여 언제든지 젊은 氣分이라든가 또는 형편상 보통 아닌 事情이 있다든가 하는 특수한 條件을 具有한 사람에게 보기 쉬운 일인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年齡은 筆蹟上에 현저한 變化를 미치는 것으로 적어도 다수의 筆蹟을 주의하여 관찰하는 사람은 대략 少年時代의 筆書인가 또는 青年, 中年時代의 筆書인가 또는 老年時代의 筆書인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은 年齡의 筆蹟上에 미치는 영향 중에 감정상태의 변화, 病的상태, 練習 등의 條件을 부지불식간에 混同하여

18 제 1편 제 2장 筆蹟의 變化性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 年齡의 筆蹟上에 미치는 영향으로서의 筋肉 運動의 變化를 주로 보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青年期 以前の 것과 老年期의 筆蹟과를 비교하는 경우에 현저한 것이다. 老年期의 筆蹟일수록 다소의 萎縮的 경향 또는 顛(震)는 경향이 많으며 소위 筆勢가 自然減退된 것으로 보이게 되는 것이다.

제 3 장 筆蹟鑑識法

筆蹟은 物理學的 立場에서 볼 때는 "點과 線"이 합쳐서 成立되는 것으로 이 構成은 個人性의 差異에 의하여 千態萬相으로 表現되는 것이다. 이런 點과 線이 합친 大小의 形態에 個人性의 특징이 潛在的 또는 殘存的으로 現出되며 이 個人性인 固有의 特長을 발견하여 筆蹟의 異同을 식별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著名한 筆蹟學者 로오칼은 實驗上으로 研究한 결과 이 固有性에 대하여 흥미있는 사실을 論하고 있는데 즉 固有性에 대하여 變化 없는 것은 文字의 절대적인 크기가 아니고 字劃 相互間의 크기의 比率 즉 相關數值라고 한다. 文字의 크기라든가 角度는 누구든지 變化하는 것으로 文字를 構成하고 있는 點과 線의 상호의 길이의 比率는 變化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筆蹟이 指紋과 같이 固有性 문제에 있어 萬人不同, 終生不變으로 될 수는 없으며 우리의 筆蹟이 前述한 바와같이 固有性도 여러 條件, 상태에 따라 變化하는 것이다. 따라서 筆蹟鑑識에 있어서는

첫째 個個人의 筆蹟이 언제나 同一의 型樣으로 現出된다고만 생각하여 變化性을 소홀히 하면 鑑識上에 誤謬를 야기하기 쉽다는 것이다.

둘째 豫想的 태도를 삼가야 하는 것이다. 즉 이 筆蹟은 대략 何某의 筆蹟이라고 자기의 心理에 있어 대체적으로 결정하여 臨하는 危險인 것이다.

筆蹟의 관찰에 熟達치 않은 者가 直觀的이며 현저하게 相異되는 筆蹟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同一의 筆蹟이라고 認定하는 경우이다.

셋째 客觀性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客觀性은 科學的 方法이며 科學的方法은 正確性을 期하는데 있는 것이다.

20 제 1 권 제 3 장 筆蹟鑑識法

筆蹟의 鑑識法으로서 우선 보편적이며 일반성이 있는 基本的 鑑識으로서 는 다음과 같은 方法이 있는 것이다.

1 절 統計的方法

이 方法은 歐美에 있어서의 筆蹟의 特長을 分類, 整理한 統計的 方法에 기초를 두었으며, 筆蹟鑑識에 科學性과 一般性을 具備한 方法으로 採用되고 있으나, 이 方法에 의하여도 漢文, 韓文 등 다수의 文字가 대상이 되므로 이것을 特長별로 分類하기 힘든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自然 鑑定人의 多少의 主觀이 介入되며 鑑定의 限界도 制限을 받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프랑스의 筆蹟學의 專門家 소오란즈·메무라는 筆蹟의 特長은 「힘, 模樣, 形態, 크기, 連續, 整頓」의 관계로서 成立된다고 하는데 日本警視廳은 이것을 다음 4가지로 特長을 分類하고 있다.

1. 筆勢, 筆壓

文字의 記載時에 用筆의 遲速을 筆勢, 紙面에 대한 用筆의 壓力을 筆壓이라고 함(筆蹟의 힘).

2. 配字形態

筆蹟의 크기, 筆蹟相互間의 크기 및 角度의 관계, 그 調和性을 말함(筆蹟의 形態, 크기).

3. 筆順

始筆의 方向, 運筆의 順序, 形態, 終筆의 方向을 말함(筆蹟의 連續).

4. 字劃構成

文字 하나를 構成하고 있는 각 字劃相互間의 크기, 角度, 間隔 등의 關係를 말함(筆蹟의 整頓).

以上の 4특징의 異同에 대하여 두 筆蹟을 각각 비교 검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筆勢의 遲速, 筆壓의 強弱은 이미 作成된 筆蹟에 대하여는 測定할 수도 없으며 經驗的으로 歸納하여 異同을 식별하게 되므로

1절 統計的方法 21

자연 主觀에 입각하는 觀望이기 때문에 配字形態, 筆勢, 筆壓의 特征 異同만으로 두 筆蹟에 대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이다. 따라서 筆蹟鑑識의 중심을 筆順, 字劃構成의 特征에 두며 配字形態, 筆勢, 筆壓의 特征을 補助的, 概括的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A. 筆順의 特徵

筆順의 特征은 前述한 바와 같이 始筆方向, 運筆方向, 運筆順序, 運筆形態, 終筆方向 등을 말하는데 이것은 주관적인 心理作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객관적으로 그 特征을 檢出할 수가 있는 것이다.

筆順의 檢査例로서 漢文中 “一”字는 하나의 橫字劃線이지만 이것은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는 것이다. 즉 始筆方向에서 볼 때

1. 始筆方向이 上向인 경우, 橫直向인 경우, 下向인 경우의 3種類로 區分되며
2. 運筆形態는 上方으로 弓曲된 경우, 直線狀인 경우, 下方으로 弓曲되는 경우의 3種類로 區分되는 것이다.
3. 終筆方向도 上向인 경우, 橫直向인 경우, 下向인 경우의 3種類로 區分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3種類의 짝짓기(組合)로서 “一”字의 橫字劃線의 筆順은 더욱 많은 種類로 分類될 수 있는 것이다. 以上과 같은 方法에 의하면 字劃이 많은 文字에서는 보다 많은 筆順의 特征을 檢出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에 英字中 “W”字를 例示하여 보면

1. 始筆方向 및 運筆形態의 일반적인 종류는 그림 4와 같이 분류되며
2. 終筆方向 및 運筆形態의 일반적인 종류는 그림 5와 같이 分類되는 것이다.

22 제 1권 제 3장 筆蹟鑑識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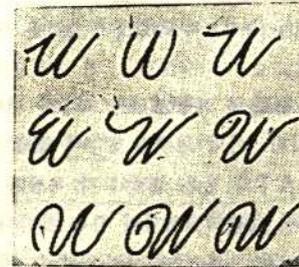


그림 4. 始筆 및 運筆形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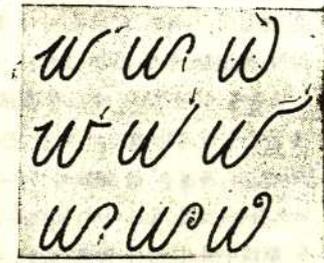


그림 5. 終筆 및 運筆形態

B. 字劃構成의 特徵

字劃構成은 하나의 文字의 字劃相互間의 크기, 角度, 間隔 등의 特征을 말하는 것으로 筆順의 特征과 같이 客觀的으로 용이하게 檢出, 比較할 수가 있는 것이다. 字劃構成의 檢査例로서 “企, 金, 今, 介”字 등의 字劃構成中 第一劃과 第二劃의 構成에 대하여

① 크 기

- (a) 第一劃이 第二劃보다 긴 경우.
- (b) 第一劃이 第二劃보다 짧은 경우.
- (c) 第一劃과 第二劃의 길이가 같은 경우.

② 間 隔

- (a) 第一劃과 第二劃이 떨어져 構成되어 있는 경우.
- (b) 第一劃과 第二劃이 交錯되어 있는 경우.
- (c) 第一劃과 第二劃이 接해서 構成되어 있는 경우.

③ 角 度

- (a) 第一劃과 第二劃으로서 構成되어 있는 角度가 銳角인 경우.
- (b) 第一劃과 第二劃으로서 構成되어 있는 角度가 鈍角인 경우.
- (c) 第一劃과 第二劃으로서 構成되어 있는 角度가 直角인 경우.

以上의 크기, 間隔, 角度의 각 3종류의 構成이 各已 짝짓기를 하면 그 결과 字劃構成은 더욱 많은 종류로 분류되는 것이다. 이것은 筆順의 특

1절 統計的方法 23

경, 字劃構成의 특징을 검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서 이상과 같은 방법에 의하면 文字에 따라 筆順의 특징, 字劃構成의 특징은 대단히 많이 檢出할 수가 있을 것이다.

다음에 이와 같이 檢出한 筆蹟의 筆順 및 字劃構成의 특징을 어떤 條件下에서 비교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어떤 筆蹟의 文字의 筆順 및 字劃構成의 특징은 他 筆蹟의 同一한 文字의 같은 個所의 각 특징과 비교 대조하는 것이 중요하며 同條件下에서 比較檢査하여야 하는 것이다. 즉 두 筆蹟中에서 각기 같은 文字, 같은 邊, 같은 旁을 選出하여 그 특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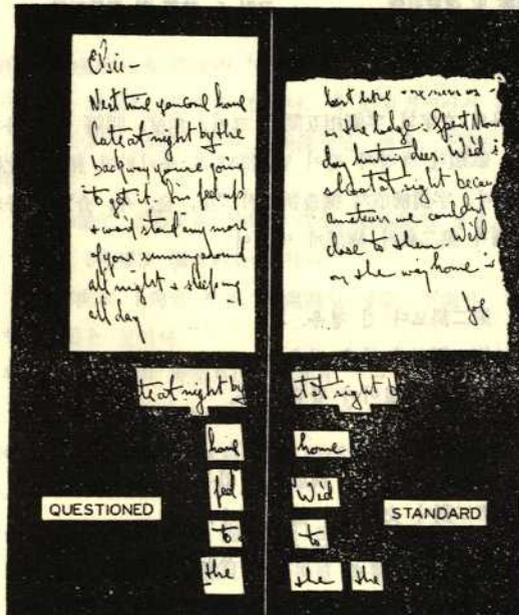


그림 6. 筆蹟에 있어서 同一한 文字의 比較 同一人의 筆蹟이라도 文字의 相異함에 따라 각기 字劃의 특징이 相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음에 이러한 筆順, 字劃構成의 특징이 어느 정도 同一할 때, 즉 이

個個別로 비교하는 것이다(그림 6), 따라서 이 鑑識方法에서는 같은 文字, 적어도 같은 邊이 없는 두 筆蹟은 鑑定키 곤란하다는 제한이 惹起되는 것이다. 물론 筆蹟은 點, 線의 착긋기이므로 一點 一劃으로 分解할 수가 있지만 異質의인 條件下에서의 특징의 鑑識은 대단히 危險한 것으로

24 제1편 제3장 筆蹟鑑識法

는 정도 두 筆蹟의 특징에서 同一한 특징이 檢出될 경우에 同一筆蹟이라고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다. 동일한 특징만 발견하여 同一筆蹟이라 하고 相異된 특징만 발견하여 別異筆蹟이라 한다면 이것은 전혀 論理의 飛躍으로서 2개의 筆蹟을 비교 대조한 경우에 同一한 특징만 존재한다는 것은 絶대로 있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반대로 相異되는 특징만 있는 것도 아니다. 이에 대하여 日本警親廳은 一定의 異同比率을 算定하여 鑑別基準에 의거 決定케 하였다. 異同의 比率은 두 筆蹟에 대하여 筆順, 字劃構成의 특징을 비교하는 경우, 다음식에 의하여 구하는 것이다.

$$\text{異同比率} = \frac{\text{同一特徵數}}{\text{對照特徵總數}} \times 100$$

또 鑑別基準은 統計的인 研究結果 다음과 같이 定하고 있는 것이다. 즉 두 筆蹟의 筆順 및 字劃構成의 특징을 비교할 경우, 그 對照特徵總數에 대하여

- ① 同一特徵數가 70% 以上인 경우(異同比率이 70 以上인 때) 同一筆蹟이라고 鑑別한다. 즉 對照特徵總數가 100個所인 경우에 그중에 동일 특징이라고 인정되는 곳이 70個所 以上인 경우에 同一筆蹟이라고 鑑別하는 것이다.
- ② 同一特徵數가 45% 以下인 경우에는 相違筆蹟이라고 鑑別한다.
- ③ 同一特徵數가 45% 부터 60%의 範圍內인 경우(異同比率이 45에서 60인 때)에는 異同의 決定을 行하지 않고 異同不明이라고 한다. 이 異同不明의 領域이 있는 것은 前述한 바와 같이 筆蹟을 特徵別로 구분할 수 없는 現狀態下에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 ④ 同一特徵數가 60% 부터 70%의 範圍內(異同比率이 60에서 70인 때)인 경우는 配字形態, 筆勢, 筆壓의 특징의 異同을 참고로 하고 각기 ① 내지 ③의 區分基準에 의해서 鑑別하는 것이다. 이상의 筆蹟鑑定方法을 總括적으로 정리하여 보면

(a) 筆勢, 筆壓의 특징

- (b) 配字形態의 특징
- (c) 筆順의 특징
- (d) 字劃構成의 특징

을 각각 比較 對照하여 鑑別하는 것이다. 이 중 (a), (b)의 특징은 歸納的인 考察으로써 對照하며 (c), (d)의 특징은 될 수 있는 限, 많이 檢出하여 異同比率을 算定하여 鑑別基準에 따라 鑑定하는 것이다. 이 異同比率을 檢出하는데 檢出해야 할 특징의 最小量은 아직 明白한 結論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2절 幾何學的方法

다음 方法은 筆蹟의 角度를 測定하여 幾何學的으로 鑑識하는 것으로서 筆蹟의 角度(각 字劃의 文字의 正中線에 대한 角度) 또한 各人 各樣의 특징이 있는 것은 前述한 바이지만 故意로 變體하는 경우 외에는 용이하게 變體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이다. 따라서 字劃의 角度와 前述의 筆癖을 合하여 鑑識하여 보면 比較적 正確한 結果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筆蹟의 比較는 條件의 數가 많을수록 筆蹟의 固有性이 明確하여지므로 실제의 경우는 筆蹟의 성질에 따라 많은 條件이 증가할 수 있는 특징이 있으면 이것을 증가할수록 그만큼 正確度도 증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 角度의 測定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比較, 對照하는 두 筆蹟을 동일한 條件下에서 攝影하여 等倍率로 확대한 後 그 擴大寫眞에 대하여 比較檢査하는 것이다. 檢査例로서 그림 7은 甲, 乙 두 筆蹟의 比較方法을 가장 明瞭하게 圖示한 것으로 筆蹟의 角度를 比較檢査하는 것이다. 甲은 問題의 筆蹟이며 乙은 本人의 筆蹟으로서 이 比較된 두 筆蹟에 있어서 ○符號가 있는 點은 相似되는 筆癖으로 認定되는 點인 것이다. 따라서 이 筆癖 및 文字全體의 運筆形態로 보아 두 筆蹟은 同一人에 의하여 作成된 것이 明若觀火한 것이다. 따라서 이 두 筆蹟의 角度 즉 字劃의 傾斜度를 檢査하기 위하여 두 筆蹟

26 제 1편 제 3장 筆蹟鑑識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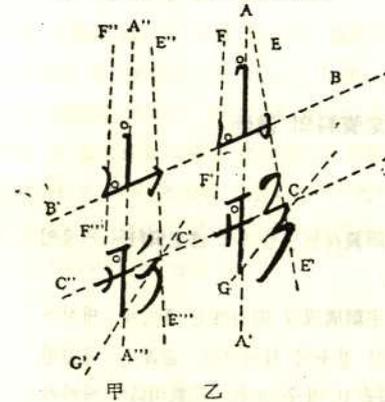


그림 7. 筆蹟의 角度測定

을 同一傾斜線上에 놓고 各個의 文字의 主要相似傾斜字劃의 延長線을 劃하여 檢査하여 보니 그 結果는 線AA'는 線 A''A'''에 平行하며 線 BB'는 線 CC''에 平行하고 線 EE'는 線 E''E'''와 대략 平行에 가까우며 또 線 FF'는 線 F''F'''와도 平行하며 또 線 CG는 線 CG'와 平行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甲, 乙 두 筆蹟은 主要部分에서 角度가 一致하므로 甲, 乙 두 筆蹟은 同一人의 筆蹟이라고 說明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檢査例는 角度測定의 하나의 기본적인 例示에 지나지 않으며 두 筆蹟을 比較한 경우 간단히 同一人의 筆蹟인 것을 알 수 있으나 筆蹟鑑識이 언제나 이와 같이 용이하게 鑑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상의 筆癖(筆勢, 筆壓, 配字形態, 筆順, 字劃構成의 特徵) 중 字劃의 角度의 比較, 對照方法은 자연적으로 文字를 構成한 경우에 대한 것으로 고의로 筆蹟을 變體하는 경우에는 용이하게 鑑別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後述하는 바와 같이 變體 筆蹟이라도 文字가 다수 存在하는 경우에는 固有性을 발揮하는 특징의 文字도 상당히 存在하므로 대체로 上述의 方法으로 施行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 方法은 기본적인 方法으로서 餘하한 경우에도 이와 같이 용이하게 鑑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을 실제로 活用하는 데는 非常한 努力과 鑑識者의 自主의 研究가 필요한 것이다.

제 4 장 鑑定資料의 適性

筆蹟資料에 있어서 비교되는 對照資料는 반드시 鑑定資料의 내용인 文字가 記載되어 있는 것을 要한다.

즉 같은 文字의 運筆關係 및 字劃構成의 固有性인 특징에 대하여 비교하는 것으로 같은 文字가 全無인 경우에 있어서의 鑑識은 곤란한 것이다. 前述한 바와 같이 橫書, 縱書인 경우 또는 記載用具에 따라서도 부분적으로 筆蹟上에 變化性을 야기하므로, 비교되는 두 筆蹟은 비교적 同條件인 것이 적당하다. 年齡에 있어서도 少年, 青年, 中年, 老年 등에 따라 筆蹟上에 또한 현저한 變化를 야기하므로 同年齡層의 筆蹟을 對照資料로 요함은 물론, 精神病等에 罹病中인 筆蹟과 罹病前의 健康時의 筆蹟이 前述의 變化性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전혀 相違하는 현상을 야기하므로 이것 역시 同條件의 筆蹟인 것을 요한다.

다음에 對照資料를 새로 즉 試筆을 採取하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다음 點에 유의하여야 한다.

1. 鑑定資料에 表示된 內容의 같은 文字를 一回에 그치지 말고 3回以上 繼續하여 書取하되 될 수 있는 한 同一用筆을 사용할 것.
2. 書取할 때에는 鑑定資料(見本)를 보이지 않고 朗讀하여 書取시킬 것.
3. 書體에 대하여는 될 수 있는 限 同書體로 採取할 것. 例컨대 鑑定資料가 楷書體인 경우에는 楷書體, 行書體인 경우에는 行書體, 草書體인 경우에는 草書體로 採取할 것. 이것은 書體가 다른 경우에는 鑑定에 곤란을 받기 때문이다.
4. 鑑定資料의 內容인 文章을 그대로 朗讀, 書取시키지 말고 다른 文章으로 作文하여 朗讀, 書取시킬 것. 이것은 本文內容을 記憶하고 있으

28 제 1 권 제 4 장 鑑定資料의 適性

므로 變體를 避하기 위한 것이다. 鑑定에 있어 筆蹟에 鉛筆 또는 심한 경우에는 赤色鉛筆로 丸印 또는 符號로 標示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後日 또 鑑定의 문제가 야기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뜻하지 않은 障礙도 招來할 수 있으므로 絶대로 丸印 또는 符號 등을 標示하여서는 안되며 또 筆蹟資料를 너무 조잡히 取扱하여 (例컨대 鉛筆筆蹟) 筆蹟自體를 汚損하는 경우에 文字의 識讀에 까지 곤란을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런 點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제5장 詐欺文書

筆蹟에 따른 문제로서 詐欺의 目的으로 作成된 文書 例컨대 書信, 領收證, 手形, 契約書, 遺言狀 등이 文明에 隨伴하여 복잡한 機關의 발달과 동시에 여러가지 文書의 交換이 빈번하여 짐에 따라 犯罪에 惡用되는 경우가 屢중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의 智能의 向上과 더불어 소위 智能犯이 增加하는 趨勢를 招來하며 勞力과 危險을 비교적 使用치 않고 行할 수 있는 이러한 종류의 犯罪는 특히 注意를 요하는 것으로 종래 실시하여 온 常識적인 檢査, 肉眼에 의한 識別은 벌써 近代刑事學上에서 打棄되었으며 科學的方法을 근거로 하여 文書를 檢査, 識別하게 된 것이다.

1절 削消文書의 檢査

A. 擴大鏡에 의한 檢査

擴大鏡의 사용은 文書上의 肉眼으로 識別되지 않는 미세한 點을 선명히 鏡視할 수 있으므로 偽造 또는 變造한 文書의 檢査에 사용되는 것이다. 가령 교묘히 削消하여 變造한 文書의 部位를 擴大鏡으로 鏡視하여 보면 紙面의 表面纖維가 混亂粗雜하게 되어 있으므로 용이하게 變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다음은 外國에서 발생한 오래된 事件例로서 어떤 財産에 關한 訴訟事件에 證據物로서 提出된 一通의 書面中 다음 文面이 問題의 焦點이 되었던 것이다. 즉 貴下의 家屋(Your house)이나, 우리들의 家屋(Our house)이나 하는 것이다. 이것을 倍率이 높은 擴大鏡으로 鏡視, 檢査한 결과 Y字를 削消變造한 것이 발견되었던 것이다.

30 제1편 제5장 詐欺文書

B. 透視에 의한 檢査

機械적으로 削消한 紙面은 그 部位가 다른 部分 보다도 얇게 되어 光線을 透過하기 용이하므로 疑問된 文書를 강한 光線과 暗箱子와의 사이에 두고 暗箱子의 다른 한쪽으로 부터 觀察할 때는 紙面의 厚薄의 差異가 명료히 現出되는 것이다.

C. 削消에 의한 文字의 滲出

紙面이 削消되어 그 削消된 紙面에 再次 文字가 記載된 경우에는 文字의 線의 周邊이 어느 정도 번진 것 같이 現出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紙面이 削消되어 纖維가 조잡한 때문이다. 만일 肉眼으로 認見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擴大鏡 또는 擴大寫眞으로써 檢査하여 보면 變造하지 않은 文字의 線의 周邊이 대단히 滑筆함에 反하여 再筆한 文字는 滲出汚損되어 보이므로 용이하게 兩者를 識別할 수 있는 것이다.

D. 塗布物質의 檢査

이것은 智能을 活用한 것으로 紙面을 削消하여 조잡하게 된 部位를 欺罔하기 위하여 아라비아 고무, 阿膠, 樹脂, 澱粉糊 등을 塗布하여 原形의 紙面과 같이 光澤을 나타나게 하는 경우로서 이런 疑心이 나는 경우에는 다음 方法에 의하여 檢査할 수 있는 것이다.

① 먼저 그 文書를 熱湯에 浸漬한 다음 알콜로 아라비아 고무, 阿膠, 樹脂를 溶解, 除去한 다음 文書를 乾燥시킨 後, 鏡視를 하든지 또는 疑心스러운 部位에 再次 물을 滴下하여 보면 削消된 部分이 다른 紙面 보다 물을 吸收하는 것이 빠름을 알 수 있다. 단 이것은 洋紙에만 施行할 수가 있는 것이다.

② 아라비아 고무를 사용한 경우에는 물로 浸出, 浸出水溶液에 알콜을 加하면 混濁이 생기며 반대로 樹脂를 사용한 경우에는 먼저 알콜로써 浸出, 浸出した 溶液에 물을 加하면 混濁이 생긴다.

1절 削消文書の検査 31

③ 澱粉糊(풀)를 사용한 경우에는 沃度の 蒸氣를 噴霧하면 그 부분이 藍色으로 되며 阿膠를 塗布한 경우에는 黃褐色으로 된다.

E. 文字의 痕跡検査

이것은 毛筆과 같이 연한 用筆로서 作成된 경우가 아니고 딱딱한 鉛筆, 펜 등으로 作成된 경우로서 그 文字를 지우거나 책갈 또는 面刀칼 등으로 削消하여도 어느 정도 條線이 沒入된 痕跡을 남기는 것이 보통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削消한 部位에 墨筆로서 (例컨대 墨汁이 많이 묻은 毛筆) 어떤 文字를 記載하는 경우에는 그 沒入된 痕跡이 다른 部分보다 濃도가 진하게 現出되는 것이다. 또 水分이 적은 墨汁으로 毛筆한 경우에는 그 沒入된 痕跡은 비교적 墨汁이 잘 묻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普通이다. 따라서 擴大鏡 또는 暗室에서 弧燈의 強한 光線으로 처음에는 文字의 縱으로 다음에는 文字의 橫으로 照射하여 보는 것이다.

F. 透過撮影에 의한 検査

이 方法은 寫眞術을 應用한 것으로 文字가 記載되어 있는 紙面(洋紙)을 前述의 칼 등으로 削消하여 고무 또는 樹脂의 손톱등(冥)으로 摩擦平均하게 한 削消部位에 文字를 改記하는 경우로서 500燭光의 電光을 文書の 裏面에서 照射하고 그 透過光線에 의하여 文書の 表面으로 부터 撮影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文書用紙 이외의 場所로 부터 직접 렌즈에 感光되지 않도록 嚴密한 裝置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露出時間은 紙質에 따라 調節하여야 한다. 이 方法으로 撮影하면 削消된 部位의 文字가 改記된 文字와 겹쳐서 촬영되므로 變造의 事實을 용이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方法은 주로 變造의 事實이 불명료한 경우에 應用되는 것으로 가령 變造는 事實이라고 하여도 消滅된 文字가 무엇인가 할 때 正確히 認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역시 이것을 應用하면 목적을 달할 수 있는 것이다.

32 제1편 제5장 詐欺文書

2절 其他變造文書の検査

文書の 일부분을 削消하여 變造하는 이외의 方法으로서 詐欺文書를 作成하는 경우는 不尠한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變造方法에 따라 檢出方法도 여러 方法이 있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偽造紙幣, 偽造郵票, 偽造證券 또는 變造印紙, 變造手票라고 하는데 이 偽造, 變造라는 말은 一見 비슷한 感이 있는 것이나 이것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法律的 常識에서도 특히 文書鑑識上에 있어서 意義 있는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에 대하여 言及하여 보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文書の 保護法益은 文書の 眞正에 대한 公共의 信用인 것이다. 그러나 法益이 文書の 眞正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오로지 文書の 名義의 眞正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가 또는 文書の 內容의 眞實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가에 관하여는 前說을 形式主義라 하고 後說을 實質主義라고 하는데, 文書の 法益이 그 眞正에 대한 公共의 信用에 있다고 하는 것으로 形式主義가 지배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文書偽造는 方法, 種類에 관하여 有形偽造와 無形偽造로 분류하는데, 有形偽造라는 것은 有形的으로 文書를 偽造하는 것, 즉 犯人이 他人의 名義를 詐稱하고 文書를 作成하는 것으로서 契約上 또는 法律上 眞實한 代理權이 없는 자가 恣意로 他人의 文書를 作成하는 것이다. 無形偽造라는 것은 文書の 作成名義에는 虛偽가 없으나 다만 그 內容이 虛偽인 경우이다. 보통 偽造라고 하면 有形偽造만을 指稱하며 無形偽造에 대하여는 특히 刑法 第227條 第228條 第233條와 같이 明文을 든 경우에 限한다. 變造라는 것은 眞正이 성립한 文書の 內容에 變更을 加하는 것이다. 그 變更의 정도는 既存文書の 內容의 同一性을 잃지 않을 정도에 있어서 그 權利義務나 事實關係의 効力, 條件 등의 證明力을 變更하는 경우에 限하는 것으로 例컨대 額面 貳千圓整의 어음을 參萬圓整으로 改筆하는 것은 그 어음의 證明力을 變更하는 것이 되므로 變造가 되는 것이다. 그

2절 其他變造文書의 檢査 33

러나 만일 既存文書의 變造로 말미암아 그 原文書의 內容과 相異한 別個의 證明力이 되는 文書를 作成하는 경우에는 前述한 文書의 偽造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 外國에서 發生한 變造文書에 關한 變造手票로서 約 壹阡萬圓을 詐取한 事件例를 들어보면, 10數名이 共謀하여 多額의 銀行預金이 있다고 생각되는 會社 또는 商店 등에 僅少한 物件을 賣却하고 그 代金을 手票로 受取하여 그 手票의 金額의 數字를 後述의 藥品 등으로 抹消하고 多額의 金額으로 改記한 후 變造犯人들은 그 手票의 支拂銀行에 發行人을 假裝하여 電話로서 預金의 殘高를 確認하고 난 다음 택시로 銀行에 到着하여 一面識도 없는 택시 運轉士에게 잠간 이 手票의 金額을 찾아 달라고 하여 厚謝하는 등으로 買收하여 그 手票의 現金을 詐取하였다는 것이다. 萬一 銀行에서 그 手票의 變造된 것이 발각되어도 犯人들은 체포되지 않게 銀行에 들어가지 않고 銀行 附近에 待機하여 狀況을 監視하고 있다가 情勢가 如意치 않으면 逃走하였으므로 犯人을 檢査하는데 있어서 搜查當局을 무척 골치 아프게 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에 日本警視廳의 科學檢査所 檢査官 町田이 어음 등 有價證券의 變造手法에 대하여 調査, 發表한 바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變造方法을 일반적으로 犯人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 實驗結果로서는 기술적으로 대단히 무리한 것도 있는 것이다.

A. 變造의 方法(手法)

① 金額欄의 抹消方法

(a) 블루블랙잉크(鐵製잉크)로 作成된 경우

블루블랙잉크의 文字는 탄닌酸第二鐵 및 沒食子酸第二鐵을 主成分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苛性소오다 溫液에 浸漬한다든지 脫脂綿 등의 연한 것에 苛性소오다 溫液을 濕潤시켜 抹消할 文字의 위를 가볍게 문지르는 氣分으로 닦으면 抹消되는 것이다. 그러나 萬年筆, 펜촉 등으로 壓筆된 것은 茶色の 痕跡이 殘留하므로 이것은 稀薄한 漂白粉溶液을 濕

34 제1면 제5장 詐欺文書

潤한 脫脂綿으로 닦으면 抹消되는 것이다. 그러나 漂白粉溶液에 長時間作用시키면 어음의 印地模樣(地模樣)까지 抹消되므로 이 限度가 熟練을 要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處理하여도 不完全한 경우에는 稀薄酸溶液을 使用하면 茶色痕跡이 完全히 抹消되는 것이다. 以上の 操作으로서 잉크文字가 完全히 抹消되지만 抹消한 채 放置하면 알칼리性으로 因하여 紙質에 變化를 招來하므로 알칼리性을 中和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따라서 中和劑로서 枸櫞酸의 水溶液에 直接 浸漬한다든지 또는 枸櫞酸水溶液을 濕潤한 脫脂綿으로 닦으면 알칼리性이 中和되어 紙質에 變化가 없어진단다.

(b) 불펜잉크로 作成된 경우

불펜잉크는 油性잉크이므로 신나, 벤젠 등의 有機溶劑에 直接 浸漬한다든지 또는 脫脂綿에 濕潤시켜 불펜잉크 文字를 가볍게 닦으면 油性과 더불어 대부분의 잉크색이 抹消되는 것이다. 완전히 잉크색이 抹消되지 않는 경우에는 市販의 잉크 抹消液(A液: 蓚酸이 主成分, B液: 漂白粉이 主成分 또는 A液: 過망간酸加里가 主成分, B液: 蓚酸이 主成分)으로서 處理하면 抹消되는 것이다.

(c) 染料잉크로 作成된 경우

染料잉크는 鐵製잉크와 成分이 相異하므로 市販 잉크抹消液으로서 간단히 抹消되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前述과 같이 어음의 印刷模樣이 變色하므로 잉크抹消液을 적당히 稀釋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d) 墨字로 作成된 경우

1) 作成된지 얼마 안되는 경우: 이것은 硝子板위에 어음을 놓고 20~30分間 水洗를 하면 抹消되는 것이다.

2) 作成된지 상당한 時間이 경과된 경우: 毛筆에 市販의 잉크抹消液을 적어 最初의 一字에 塗布하고 미리 준비된 고무호오스로 부터 少量의 물을 射出하면서 水洗한 後 乾燥하고 또 이와 같은 操作을 반복하여 차례로 다음 字를 抹消處理한다는 것이다. 一字씩 抹消할 때 빨리 水洗를 하지 않으면 墨色이 紙面에 浸透된다든지 또는 漂白粉이 強하므로 紙質

에 變化를 招來할 念慮가 있다.

이와 같이 操作處理하여도 抹消된 부분은 炭素痕跡으로 炭素障가 殘留하므로 過酸化水素水을 묻힌 毛筆로 文字의 痕跡에 따라 塗布하면 抹消되는 것이다. 이때 過酸化水素水에 의하여 작은 거품이 발생하므로 준비된 吸取紙로서 빨리 過酸化水素水을 吸取하는 것이다. 이 抹消된 部位에 미리 採取한 字型을 보면서 墨字로서 金銀을 記入하는 것이다. 字型의 採取方法은 墨文字의 위에 물을 噴霧한 후 半透明紙를 덮고 그 위를 다리미로 다리면 뒤집힌 文字의 字型이 採取되므로 이것을 裏面으로부터 보면 완전한 字型이 되는 것이다.

(e) 水性塗料(그림물감)로서 作成된 경우

이것은 水洗한다든지 毛筆로서 물로 가볍게 닦으면 抹消되는 것이다.

② 記入의 方法 以上과 같은 方法으로 抹消한 紙面部位에 새로운 文字를 記入할 때에는 抹消한 文字 위에 作製하고 抹消한 原字의 痕跡이 隱蔽되도록 作成하는 것이다. 또 새로운 文字를 記入할 때에는 抹消하기 前의 原字의 筆體를 잘 記憶한다든지 또는 字型을 採取한다든지 또는 寫眞으로 撮影하여 두고 이것을 練習, 模倣하여 墨水 文字를 抹消한 紙面部位는 墨汁 또는 잉크로 記入하며 墨字를 抹消한 경우에는 반드시 墨字로서 記入한다는 것이다.

B. 檢査法

① 普通의 寫眞에 의한 檢査法 墨水文字로 作成된 文書는 上述과 같이 化學藥品으로 墨水를 抹消하는 데 이러한 경우에는 그 藥品을 사용한 部位가 淡黃白色으로 汚損되며 고르지 變造된 경우에는 肉眼으로 識別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寫眞으로 撮影하여 檢査하면 그 抹消된 部分이 淡黑色의 汚點으로서 顯出되는 것이다.

② 抹消文字의 檢出法 墨水文字의 抹消藥品으로 上述외의 鹽酸, 次亞鹽素酸소오다, 鹽素水 등이 있는데 이러한 藥品을 사용하여 化學적으로 抹消되어 있는지의 與否를 檢査하는 方法으로서 그 疑心나는 部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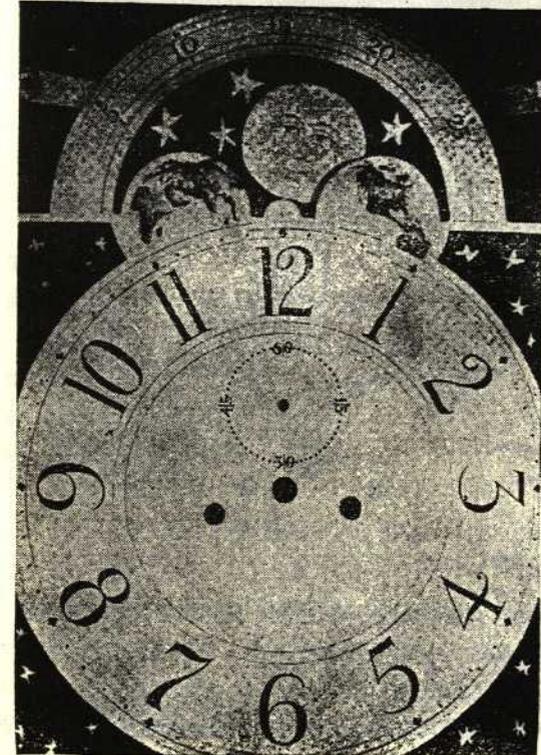


그림 8. 普通方法에 의한 寫眞

에 라크무스試驗紙를 壓着하여 보아서 그 試驗紙가 赤色으로 變化할 때에는 抹消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抹消되어 있는 部分의 文字는 다음과 같은 方法에 의하여 顯出할 수가 있는 것이다.

(a) 墨水文字가 抹消된 部分에 稀薄한 암모니아水和 탄닌酸溶液을 毛筆로서 塗布하든가 또는 黃血鹽 溶液을 塗布하면 原文字가 顯出되는 것이다.

(b) 紫外線發光器에 필타를 사용하여 變造文字의 部分을 檢出하여 보면 抹消된 文字의 形態가 顯出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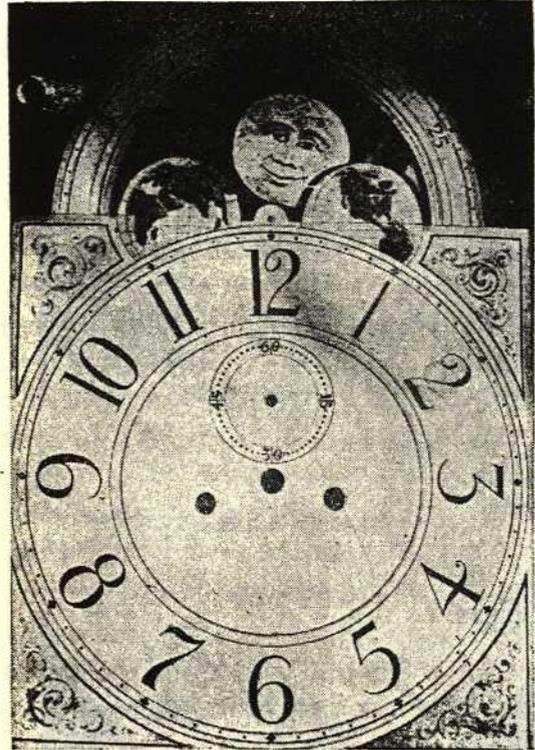


그림 9. 赤外線寫眞에 의하여 抹消된 部分의 檢査

(c) 위의 紫外線發光裝置가 없는 경우에는 그 部分을 ฟู로세스乾板을 사용하여 撮影하면 그 原板上에 消失된 文字가 顯出되는 것이다.

(d) 赤外線寫眞에 의한 檢査……抹消된 文字의 形態는 그림 9와 같이 顯出한다.

제 6 장 偽 筆

普通偽筆은 그 目的하는 바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時日, 數字, 署名 등을 模倣하는 경우와 投書, 脅迫文書等, 不穩文書에 自己筆蹟의 固有性을 隱蔽하기 위하여 故意로 變體를 쓰는 경우이다.

前者의 경우 他人의 眞筆을 模倣하는 方法도 練習에 의하는 경우와 轉寫에 의하여 文字를 再顯하는 즉 轉寫偽筆인 경우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練習에 의한 模倣筆蹟은 專門의 技術을 요하므로 여기에서는 省略하고 轉寫偽筆 및 變體에 대하여 略述한다.

1절 轉寫偽筆의 檢査

他人의 眞筆을 練習하여 鉛筆로서 大體의 形態를 劃하고 그 위를 잉크(잉크文字인 경우)로 進行한다든지 또는 半透明紙(例컨대 美濃紙類 등)를 덮어 文字 그대로 鉛筆 또는 기타 記載用具로서 轉寫하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用途의 目的物에 押筆하여 顯出된 押筆痕跡에 따라 毛筆 또는 펜으로 追筆하여 原來의 文字를 再顯, 眞筆을 模倣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角度的 研究는 無意味한 것이다. 轉寫偽筆은 文字의 痕跡을 追筆하는 까닭으로 肉眼으로는 潤筆로 보이는 경우에도 확대하여 보면 微細한 運筆까지 現出되므로 眞筆과 問題되는 偽筆을 擴大寫眞에 의하여 比較檢査하는 것인데 眞筆은 流暢潤達함에 反하여 偽筆은 그 運筆이 澁滯하고 있는 것이다. 즉 運筆의 筆勢가 弱하고 떠는 形態인 것이다. 이것은 偽筆者가 眞筆의 形態를 作成하는데 專念하므로서 自然스러운 筆調가 現出되지 않는 결과이다. 또한 이것을 過度하게 擴大比較하여 보면 眞筆은 文字의 各構成字劃이 直線 또는 曲線으로 成立됨에 반하여 偽

2절 變體筆蹟의 檢査 39

筆은 屈曲이 되어 있으며 恰似 점을 먹고 作成한 것 같이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또 때에 따라서는 鉛筆의 線이 잉크의 線外에 現出되는 경우도 있으며 또 어떤 경우에는 顯微鏡下의 鏡視檢査에서 잉크文字 밑에 白墨粉이 발견되는 수도 있는 것이다.

2절 變體筆蹟의 檢査

變體의 手法으로서 歐美各國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固有性인 特徵을 벗어나려는 方法을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分類하고 있다.

1. 傾斜: 故意로 傾斜文字를 作成하여 運筆形態 및 角度에 심한 變化를 惹起하는 경우가 普遍的이다.
2. 速度: 用筆의 速度를 빨리 또는 느리게 하여 筆勢의 相違로서 특히 書體에 變化를 惹起하는 것이다.
3. 不調和性: 能筆家가 拙筆로 變體하는 경우, 活字와 같은 四角形의 文字로 變體하는 경우.
4. 크기: 文字를 크게 또는 작게 쓰는 경우.
5. 換手: 右手筆蹟인 사람이 左手로 文字를 作成하여 變體하는 경우.
6. 顛字: 起筆者는 文字를 거꾸로 記載하여 相對方은 正字로 보이게 變體하는 경우.

이와 같이 變體筆蹟으로서 自己의 固有性인 特徵을 숨긴다는 것은 理論上으로는 可能하지만 實際面에서는 벗어나기란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다. 上述한 바와 같이 筆蹟은 文字를 쓰는 사람의 行動의 軌跡으로서 각자의 個性의 表現인 것이다. 따라서 變體筆蹟은 이 固有性을 意識적으로 變換하여 心身의 活動에 變化를 惹起한 것으로 하나의 變態의 人格變換인 것이다. 이 人格變換은 제한된 一時的이며 技巧의인 것으로 固有性을 완전히 脫皮한 것은 아니다. 설혹 短文의 書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 短文의 書도 反復한다든지 특히 長文의 書를 作成하는 경우에는

40 제1권 제6장 偽 筆

變體하여도 文字가 作成 增加함에 따라 固有性인 特徵도 서서히 增加 明白하여지는 것이다. 다음에 換手文字는 熟達치 못한 左手로 文字를 作成하므로 平時 右手로 作成하는 경우와 같은 行動으로 書體, 運筆順序, 連續, 調和性에 留意하여도 效果意思와 表示行爲가 調和性을 喪失하므로 左手로 作成된 것을 看破할 수 있으며 顛字筆蹟 역시 換手文字와는 相異되는 점은 拙筆에도 있으나 筆勢에 있어서 類癢의 共通點이 있으므로 이 점을 특히 注意檢査하는 것이다. 筆者가 取扱한 變體偽筆에 관한 事件實例로서, 湖南의 어느 고을 富豪 金某氏에 대한 不隱文書被疑事件이 있는데, 金氏는 어느 날 搜查機關의 召喚을 받고 出頭하여 본즉 의외에도 政府를 誹謗하는 內容의 投書作成者로서 嫌疑를 받고 있었던 것이다.

전혀 그런 事實이 없는 金氏는 놀랍고도 一面 어이가 없었다. 그러나 投書의 筆蹟鑑定은 金氏의 筆蹟이라는 무섭고도 불행한 結果를 가져왔다. 그러나 事必歸正이란 信念을 되새기며 自身의 潔白함을 여러번 嘆願도 하였으나 모두 허사로만 돌아가 끝내 有罪의 確定判決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於焉 세월은 흘러 二年六個月이란 獄苦를 치르고야 겨우 出監되었던 것이다. 出監된 金氏는 勿心兩面으로 얻은 被害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筆蹟으로 말미암아 특히 罪人 아닌 罪人으로 된 그 억울함을 생각할 때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았고 怨痛하였다. 그래서 이 무고한 陋名을 벗기 위하여 再審請求手續을 밟았던 것이다. 이때 筆者가 그 投書筆蹟을 鑑定하여 본즉 一見 本人의 筆蹟과 誤認될 정도의 고도로 洗練된 模倣筆蹟인 偽筆로서 金氏의 筆蹟과는 全然 相違하였던 것이다. 그 후 再審手續은 급속히 進展되어 搜查結果에서도 本人을 中傷謀陷하기 위하여 作成된 投書임이 判明되어 確定判決을 뒤엎고 1966年 12月 無罪가 되므로서 白日下에 冤罪를 풀게 되었던 것이다. 이 事件例에서 우리는 自明之理로 筆蹟鑑定の 結果가 전면 반대로 되었다는 事實을 알았다. 물론 前者의 筆蹟鑑定에 잘못이 있지만 오히려 筆蹟 그 自體가 如何히 鑑別에 困難하다는 것을 證明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잠깐 이 事件에 대한 鑑識內容을 紹介하여 보면,

2권 變體筆蹟의 檢査 41

鑑定資料

1. 證第一號(第一次投書原文復寫高眞)
2. 證第二號(金氏의 投書原文試筆復寫高眞)
3. 證第三號(第二次投書原文復寫高眞)
4. 證第四號(某人的 筆蹟)
5. 證第五號(金氏의 平常時의 筆蹟)

鑑定事項

本證據物證第一號의 筆蹟과 證第二號, 證第三號, 證第四號, 證第五號의 筆蹟과의 同一與否.

檢査記錄

本證據物證第一號의 筆蹟과 證第二, 三, 四, 五號 筆蹟의 異同與否에 對하여 筆順, 字劃構成의 特徵을 세밀히 檢査하여 그 檢査筆蹟을 指摘함.

(1) 黨字

- 證第一號(1頁 9行, 2頁 2行)
- 證第二號(7頁 14, 15, 17, 20行)
- 證第三號(26頁 5行, 27頁 2行, 10行, 45頁 2行, 47頁 19行)
- 證第四號(32頁 3行, 33頁 1行)
- 證第五號(無)

特徵:

證第一號와 證第三號, 證第四號에 있는 黨字筆蹟의 構成字劃은 第五劃終筆이 拋物曲度를 劃함에 반하여 證第二號는 第五劃終筆이 銳角을 形成함.

(2) 奚字

奚字構成字劃中 第9劃과 第10劃의 運筆形態에 있어서의 長短을 比較計算함.

- 證第一號 奚字總數 7字
- 證第二號 " 2字
- 證第三號 " 37字

42 제1면 제6장 偽筆

證第四號 奚字總數 無

證第五號 " 3字

1. 第9劃의 長이가 第10劃 보다 긴 경우

證第一號 約 86%

證第二號 0%

證第三號 約 63%

證第五號 0%

2. 第9劃의 長이가 第10劃과 같은 경우

證第一號 約 14%

證第二號 約 50%

證第三號 約 16%

證第五號 0%

3. 第9劃의 長이가 第10劃 보다 짧은 경우

證第一號 0%

證第二號 50%

證第三號 約 20%

證第五號 100%

特徵:

(a) 證第一號와 證第三號 奚字筆蹟의 構成字劃은 第9劃이 第10劃 보다 긴 점.

(b) 證第五號는 第9劃 보다 第10劃이 긴 점.

(c) 證第二號는 第9劃과 第10劃이 거의 長이가 같은 점.

(3) 모字

證第一號 (1頁 6, 9行, 2頁 6行, 4頁 12行, 5頁 4行, 6頁 5行)

證第二號 (5頁 6, 25行, 8頁 9, 22行, 9頁 1, 3, 14行)

證第三號 (17頁 3行; 18頁 3, 4, 8行, 19頁 1行, 27頁 8行, 40頁 7, 9行, 41頁 4, 6, 9, 12行, 42頁 2, 4, 5, 12行, 43頁 4, 5, 9, 12행)

2권 變體筆蹟의 檢査 43

10行, 44頁 6,7行, 45頁 1,2,10行)

證第四號 (30頁 1,5行, 31頁 3,4行, 32頁 2行, 33頁 5行, 36頁 4,7行, 39頁 2行, 45頁 3行)

證第五號 (2頁 2,12行)

特徵:

證第一號, 證第三號(모字 總字數中 約 80%), 證第四號의 모字 構成字劃의 特徵은 第二劃이 鈍角을 形成하고 第三劃의 終筆이 대체적으로 銳角 없는 둥근型이며 證第二號, 證第五號의 모字 筆蹟의 構成字劃中 第二劃 및 第三劃構成의 特徵은 銳角을 形成하는 點.

(4) 虎字

證第一號 (1頁 11,12行, 2頁 5行, 3頁 1行, 4頁 12行, 5頁 1行)

證第二號 (2頁 8行, 3頁 6行)

證第三號 (41頁 3行, 44頁 9行)

證第四號 無

證第五號 (2頁 1,~ 3,6行)

特徵:

證第一號, 證第三號의 虎字 筆蹟의 構成字劃特徵은 虎字劃中 七字가 几字의 右上端部에 위치하며 几字의 左端部에 가서 ㅅ한 空間을 만들고 있는 點.

考 察

金氏의 筆蹟은 始終一貫 筆法이 拙筆한 運筆形態의 特異性과 특히 誤字, 脫字等이 부분적으로 現出한데 비하여 投書內容의 筆體는 金氏의 筆蹟의 特徵을 模倣하여 一瞥컨대는 金氏의 筆蹟으로 서 누구든지 認定하리만큼 運筆形態가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全字劃을 一字 一字 주의 깊게 檢査하여 보니 前述偽筆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固有性인 自己의 筆蹟의 特徵은 拙筆과 能筆로서 不調和를 形成한데 반하여 金氏의 筆蹟은 始終一貫 동일한 拙筆

44 제1편 제6장 偽 筆

과 特異한 固有性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에는 外國에서 있었던 僞筆事件의 實例를 紹介한다.

新絲이 眞은 五月 어느날 M警察署 相談係에 「妻가 家出한지 二週日이 지나도록 消息이 없으니 搜索해 달라」고 찾아 온 사람이 있었다. 名卿을 보니 P會社에 勤務하는 K氏로 되어 있었다. 妻가 家出하게 된 事情을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었다. 5月 2日 저녁 自己가 平常時와 다른 없이 勤務處에서 退勤하여 집에 돌아와 本즉 저녁 準備도 되어있지 않고 外出하였는지 妻도 보이지 않아 어쩔지 尋常치 않았다. 事實인즉 오늘 아침에 些少한 일로 妻와 甚한 鬭爭을 하고나서 出勤하였던 것이다. 妻는 이것을 못마땅히 생각하고 또한 自己를 끌려줄 心算으로 家出을 한 것이 아닌가 하고 單純하게 取扱하였다. 그러나 家出을 한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므로 걱정이 되어 여기저기 알아보았으나 行方이 不明할 뿐 宗적을 알 수가 없었다. 혹시 親庭에 가지나 않았을까 하고 即時 照信을 하여 보았으나 그런 事實이 없다는 것이다. 그만한 일로 집을 나간 妻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 一面으로는 가엸은 생각이 서로 번번이 되어 이력 저력 不安스러운 時日이 흐르는 어느날 뜻밖에도 妻로부터 죽음을 擇한 內容의 좋지 못한 편지가 날아 오고 同時에 H洞內에 있는 妻의 親舊에도 같은 內容의 뜻인 편지가 왔다는 通知를 받았다. 놀라움과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몰라 찾아 왔다는 것이다. M警察署에서는 이 家出申告를 받고 即刻 家出人票를 作成하여 自殺할 念慮가 있다고 要注意 까지 特記한 後 全國에 手配를 한 것이다. 그러나 이렇다할 端緒도 把握하지 못한 채 數個月이 지나가고 말았다. 그런데 M警察署의 署員은 申告人 K氏의 身邊에서 異常한 風聞을 入手하였다. 그것은 K氏에 妾이 있다는 것이며 그 妾이라 하는 것은 自己의 勤務處에서 女事務員으로 있었던 C라는 女子로 A市에 居住하고 있다는 것이다. 家出한 婦人도 그 事實을 알고 있는 듯하였으 며 그 탓인지 夫婦싸움이 잦았다는 이웃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 그것이 單純한 浪說인가 아닌가를 M警察署에서 偵探을 해 본 結果 A市에 C라는 女子가

2절 變體筆蹟의 檢査 45

果然 살고 있다는 事實을 알아내었다. 婦人이 집을 뛰쳐나간 것도 多分이 이런데 原因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推定이 가는 것이다. 그러나 家出의 原因을 至今에 와서 究明하였다고 하여도 家出한 本人을 찾지 못하면 어느 때 까지나 解決은 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이 單純하게 여겨왔는데 그 婦人이 家出한 것은 거짓말일 것이야,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자칫하면 죽었을지도 몰라? 하는 이웃 사람들의 소문이 자자하였다. 警察에서는 실마 그럴리야 하고 眞相調査에 나섰다. 調査가 進行됨에 따라 그러한 疑心이 짙어져 갔다. 따라서 K氏에게 妻로부터 왔다는 遺書의 편지와 妻가 쓴 書類等を 一括하여 提出할 것을 要求하게 되었다. 이에 應하여 提出된 資料를 根據로 하여 妻가 보내왔다는 편지와 親舊에게 보내왔다는 妻의 편지가 果然 本人이 쓴 것인지 아닌지의 筆蹟鑑定을 하게 된 것이다. 그 鑑定の 結果는 어떻게 되었을까, 뜻밖에도 男便인 K氏의 僞筆이라는 것이 判明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僞筆이라는 것이 統露된 K氏는 警察의 本格的인 取調에 더 감출 수가 없어 自己의 손으로 妻를 扼殺하였다는 犯行을 自供한 것이다. 이는 妻를 殺害한 후 7個月이나 經過한 12월도 다 지난 그믐계의 일이었다.

—事件은 妻가 家出을 하였다는 5월 2일에 일어났다. 이웃 사람의 소문과 같이 婦人은 男便이 A市에 妾을 두고 있는 것을 알고는 平素부터 不滿을 품고 있었다. 이날도 이것이 導火線이 되어 싸움이 벌어졌다. K氏는 自己의 立場이 難處해지므로 虛勢를 부리며 바가지를 굶는 것도 너무하다고 하며 妻를 毆打하였다. 그러자 妻도 질세라 하고 히스테릭한 소리를 지르면서 發作的으로 男便에게 덤벼들었다. 男便인 K氏는 極度로 화가 치밀어 自己妻를 마루바닥에 넘어뜨려 놓고는 兩손으로 목을 눌렀다. 妻는 恐怖의 表情이 되며 물불을 가리지 않고 發惡하므로 男便 또한 이에 지지 않고 兩손에 더욱 힘을 주어 눌렀다. 얼마 안가서 妻는 눈을 위로 뜨고 입에서 흰거품을 내뿜으며 죽어가는 것이었다. 男便은 妻가 다시 살아나면 困難하다고 생각한 끝에 나이롱 끈으로 목을 단단히 졸라매었다. 그리고는 그 死體를 一時 벽장 속에 숨겨두고는

46 제1면 제6장 僞筆

아무 일도 없는 듯 出動하였던 것이었다. 저녁 늦게야 집에 와서는 死體의 處理에 들어갔다. 밤도 子正에 가까운 夜深할 무렵에 房 밑의 땅을 1m 가량 파헤치고는 死體를 埋藏하였던 것이다. K氏는 이렇게 한 후 窮理 끝에 妻가 家出을 하였다는 거짓 申告를 마련하여 事實인 것 처럼 보이도록 하기 爲한 計劃을 세웠던 것이다. 그래서 妻의 筆蹟을 여러 角度로 模倣하고 練習을 한 후 遺書와 親舊에게 보내는 편지를 만들어서 우체통에 넣고는 妻로부터 받은 편지로 假裝한 것이다. 그러나 K氏가 한 짓은 이것만이 아니다. 어느 程度의 教育도 받았으므로 편지의 筆蹟에 혹시 疑心을 받지 않을까 하는데 까지 神經을 썼다. 그래서 妻의 筆蹟을 흉내내는데 使用한 妻의 노트中에서 自己가 模倣하기 쉬운 主要文字를 골라 妻가 쓴 文字를 우정 지우고는 다시 써놓기 까지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이 綿密한 計劃으로 本妻殺害犯罪는 7個月이나 모르고 지났지만 結局 K氏가 가장 머리를 짜냈다고 하는 僞筆에서 發覺이 되어 事件은 急轉直下の 解決을 보게 된 것이다. 끝으로 鑑定內容의 一端을 揭示하면 그림 10, 11과 같이 被害者인 妻가 쓴 文字와 加害者인 男便이 模倣하여 쓴 文字의 比較에서 外觀上으로는 相似된 感이 있으나 筆勢 및 終筆等의 特徵을 具體的으로 觀察하면 많은 差異點을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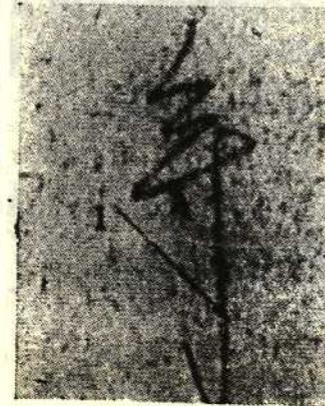


그림 10. 被害者인 妻의 筆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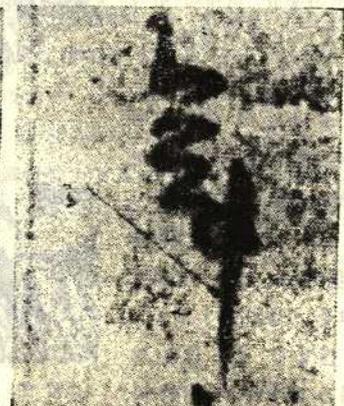


그림 11. 加害者인 男便의 筆蹟

제 7 장 炭化文字의 檢査

疑心이 되는 文書가 燒却되어 文字의 微細한 點 등이 全然 불명료한 경우에도 만약 그 재(灰)가 부서지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왕왕 文書의 變造與否를 推知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그 재(灰)의 文字가 記載 되었던 部分을 자세히 觀察하여 보아서 文字가 全然 殘留하지 않았든가 또는 전혀 같은 色度로서 殘留하고 있을 때에는 대체적으로 變造하지 않았다고 推斷하여도 無妨한 것이다. 그러나 만일 文字의 一部分만이 殘留하고 또는 어느 一部分만의 文字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變造한 것으로 看做하여도 큰 誤謬는 없을 것이다. 이것은 예컨대 잉크를 사용한 경우에 만약 同一의 잉크로서 記載되어 있는 때에는 그 紙面이 재(灰)로 화할 때 같은 文字의 殘留關係는 같은 現象을 維持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別異의 殘留關係가 現出되는 것은 相異된 잉크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예컨대 같은 色의 잉크라도 鐵分을 含有한 것은 재(灰)로 된 경우 紙面



그림 12. 炭化文書(上部)에서 寫眞에 의하여 文字를 顯出한 것

48 제 1 권 제 7 장 炭化文字의 檢査

에 淡赤茶色의 形跡을 남기며, 鐵分을 含有하지 않은 카본(炭素), 아 니린 등의 成分을 含有한 것은 何等의 形跡도 남기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재(灰)에 대한 觀察은 만일 文書가 燒却되어 남은 部分이 있으면 서서히 태워서 以上의 觀察方法을 施行하여 變造與否를 試驗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方法은 잉크의 相異成分을 利用한 것으로서 한 文書에 전부 同一成分의 잉크를 使用한 경우는 이 方法으로서는 觀察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에 잉크 밑에 記載되어 있는 鉛筆의 痕跡은 이 方法으로서 檢査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그 文書를 溫度를 加하면서 태우면 黑鉛은 燒失되지 않으므로 鉛筆로 記載된 部分이 殘留되는 것이다. 그러나 赤色鉛筆은 이 方法으로는 곤란하며 이에 반하여 靑色鉛筆은 色素에 鐵分을 含有한 것이 많기 때문에 普通鉛筆의 경우와 같이 觀察할 수 있는 것이다. 또 印刷用 잉크도 例外로 鐵分을 含有한 것은 이 方法으로 觀察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에 이 檢出方法에는 資料에 따라 다음과 같은 差異가 있다. 즉 재(灰)로 되는 紙面이 燃燒하여 곧 부서져 그 形跡을 남기지 않는 경우로서 예컨대 주로 植物質 纖維로 製造한 연한 美濃紙와 같은 것은 부적당한 것이다. 이에 반하여 燃燒된 후 紙面이 비교적 그대로 維持되는 경우 예컨대 高嶺土 其他 礦物性 粉末을 많이 加工하여 製造된 洋紙와 같은 것은 적당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洋紙인 경우에도 織物의 廢物로서 製造된 종이는 美濃紙와 같이 부적당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적당한 종이도 礦物性 物質로 加工을 하는 경우 즉 醋酸알미늄溶液을 충분히 濕潤乾燥한 후에 태우면 종이의 形態는 白色의 재(灰)로 維持될 수 있는 것이다.

제 8 장 紙質檢査

詐欺文書의 檢査에 잉크, 墨과 같이 주의할 것은 文書로서 사용되는 紙類인 것이다. 즉 잉크, 墨에 관하여는 識別되지 않았던 점의 文書가 紙質檢査로서 明瞭히 識別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大略 問題가 되는 경우로서는 數枚의 文書中 몇 枚가 바뀌어져 있던가 또는 오래된 文書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새로운 종이에 加工한 경우와 혹은 疑問이 되는 文書의 종이와 疑心이 나는 사람의 日常 使用하는 紙類와의 關聯與否인 것이다. 따라서 詐欺文書에 관하여는 紙質檢査 또한 중요한 것이다. 紙質의 檢査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施行하고 있다.

1 절 一般的檢査

1. 紙面을 透視하여 그 紙纖維의 濾取方法의 如何.
2. 濾取紋樣, 商標, 記號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類似의 如何. 但 洋紙의 경우이다.
3. 擴大鏡下에 있어서의 紙面의 纖維狀態.
4. 紙面의 纖維中에 含有된 鐵物性 粉末의 有無.
5. 古文書로 假裝한 疑心이 있는 경우에는 染色한 色素의 有無, 帶黑色을 보이게 한 경우에는 烟塵等의 滲透有無.

以上の 方法은 보통의 文書에 한하지 않으며 書畫用 特殊性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다. 또한 특별한 技術 또는 熟練을 요하지 않고도 檢査할 수 있는 비교적 容易한 方法이다.

50 제 1 권 제 8 장 紙質檢査

2 절 物理的檢査

A. 重 量

檢査할 一定部分의 紙面을 空氣中에서 乾燥한 후 精密한 化學天秤에서 秤量하여 얻은 重量으로서 全紙의 重量을 計算하는 것이다.

B. 종이두께

檢査할 紙片을 紙厚測定用 “마이크로 미터”로서 測定한다.

C. 強度 및 伸度

強度는 종이의 “抵抗力”, 伸度는 종이의 伸長力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보통 슐하아氏의 紙強試驗器를 사용하여 測定한다.

3 절 化學的檢査

A. 사이즈 檢査

“사이즈”라는 것은 종이의 纖維間의 空隙을 閉塞하고 잉크의 滲出을 防止하고 紙質의 強度를 維持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材料로서 주로 樹脂 사이즈, 阿膠사이즈 등이 사용되지만 이외에도 脂肪, 카제인, 파라스테아린 등이 稀少하지만 使用되는 경우도 있는 것이다. 左右間 사이즈의 檢査는 우선 檢體인 종이에서 사이즈를 抽出하여 化學的方法에 의하여 사이즈의 種類를 試驗하여 識別하는 것이다.

B. 澱粉檢査

紙類에 따라서는 澱粉을 사용하는 것도 있으므로 이것을 檢出함으로써 異同與否를 識別하는데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檢査할 종이의 一片을 取하여 少量의 물에 浸漬, 약간 加熱, 冷却한 후 沃度溶

4절 顯微鏡的纖維檢査 51

液을 滴下하여 藍色을 물하면 澱粉이 檢出되는 것이다.

4절 顯微鏡的纖維檢査

우선 檢査할 紙의 一片에 稀薄한 加性소오다 溶液을 가하고 加熱한 후 紙를 濾取, 蒸溜水로 加性소오다 成分을 완전히 除去하여 載物硝子 위에 놓고 分離針으로 離解한 후 顯微鏡으로 100~150倍 정도에서 鏡 視하여 보면 각기 特殊의 纖維形態를 檢査할 수 있는 것이다.

제 9 장 . 文書作成時期的 鑑別

文書의 作成時期 鑑別은 考古的 價値 있는 文書는 물론, 遺言狀 등의 作成時期가 未分명한 文書, 특히 民, 刑事事件에 있어서 爭訟의 對象이 되는 詐欺文書 또는 搜查段階에 있어서 事件의 真相을 해결하는 유력한 端緒가 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文書의 作成時期를 정확히 鑑別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鑑別의 對象이 되는 文字에는 墨文字, 잉크文字, 鉛筆文字, 타이프라이터文字, 印影 등이 있으며 文字를 作成하고 있는 文書로서의 用紙 또한 여러 種類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作成時期問題에 있어서 用紙로부터 作成時期를 鑑別한다는 것은 때에 따라서는 부적당한 경우가 있는 것이다. 例컨대 詐欺文書인 경우로서 用紙自體는 오래된 것이라도 어떤 文字를 記載하여 或種의 文書를 最近에 作成하였다면 사실 作成時期는 오래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文書의 作成時期的 鑑別은 各種의 文字에 대한 記載時期에 의하여 鑑別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이 鑑別은 目的에 따라 다음과 같이 分類할 수 있는 것이다.

1. 絶對的 記載時期

이 文書는 어느 때 作成되었는가 하는 경우이다.

2. 相對的 記載時期

數通의 文書가 동시에 作成되었는가, 또는 別異의 時期에 作成되었는가, 또는 어느 것이 먼저 作成되었는가, 또는 文書中 挿入文字가 있는 경우에 本文과 同時期에 作成되었는가 혹은 후에 挿入作成되었는가 하는 경우이다.

以上の 作成時期的 鑑別中 相對的 記載時期에 대하여는 비교적 容易한 것이나 絶對的 記載時期的 鑑別은 文書의 種別 및 保管狀態 등을 考

1절 墨에 대하여 53

慮하여야 하므로 곤란한 경우도 있는 것이다.

墨文字와 잉크文字의 記載時期의 鑑別方法에 대하여는 다음에 밝히는 바와 같거니와 카본紙(墨紙)文字, 鉛筆文字는 化學的으로 대단히 안전하며 記載時期가 상당한 期間이 경과하여도 變化하지 않으므로 아직도 확실한 鑑別方法은 發見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1절 墨에 대하여

墨에는 松烟性的 墨과 油烟性的 墨이 있는데 松烟性的 墨이 처음으로 제조된 것은 漢나라 時代며 油烟性的 墨은 宋나라 時代 때 제조된 것이라고 한다. 墨의 主原料는 松烟, 油烟 등의 炭素粉末에 少量의 麝香, 梅花龍腦 등의 香料 및 阿膠를 加하여 煉合固形化한 것이다.

A. 墨文字의 作成時期

墨文字의 作成時期의 鑑別은 종래 美術界에서 施行하고 있었지만 그 鑑別方法은 墨의 光澤, 墨色, 用筆의 特徵, 墨의 染着面의 顯微鏡的 檢査 등을 基礎로 하여 主觀的으로 행한 것으로서 그 鑑別도 몇 百年이라는 年代의 差를 겨우 鑑別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墨의 그 主原料인 炭素粉末은 化學的으로 대단히 안전한 物質로서 상당한 時間이 경과하여도 墨의 光澤, 墨色 등의 外觀에는 거의 變化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墨文字의 外觀만으로 記載時期를 鑑別한다는 것은 부적당한 것으로서 적어도 客觀性이 있는 鑑別方法은 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墨文字의 精確한 作成時期의 鑑別은 오랫동안 未決의 領域으로서 客觀性이 있는 科學的 方法이 요구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日本 警視廳, 科學檢査所 菊地氏는 墨의 副原料인 阿膠가 紙上에서 時間이 경과함에 따라 그 凝固度가 強化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墨文字의 記載時期의 鑑識方法을 研究考察하였다. 이 方法은 文書에 記載되어 있는 墨文字의 일부를 切取하여 解膠劑(含糖페프신 8%溶液)의 溶液中에 浸漬

54 제1편 제9장 文書作成時期의 鑑別

하면 墨이 溶解되기 시작하며 새로운 墨文字는 오래된 墨文字 보다도 빨리 溶解되는 성질을 이용한 것이다. 墨文字를 解膠劑의 溶液中에 浸漬하여 墨이 溶解되기 시작할 때 까지의 時間을 解膠速度라고 하며 이 解膠速度를 각 墨文字에 대하여 동일한 條件에서 測定하여 비교하는 것이다. 따라서 解膠速度가 빠른 것은 늦은 것 보다 빠른 時間에 記載된 것으로 鑑別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방법에 의하여도 作成時期의 差가 約 4年 이내의 것은 鑑別이 곤란하다는 제한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4年 이상 前에 記載한 것이냐? 또는 最近에 記載한 것이냐?를 識別할 수는 있지만 1年前 또는 半年前에 記載한 것이냐? 혹은 最近에 記載한 것이냐?의 鑑別은 곤란한 것이다. 이 解膠速度의 測定에는 墨文字의 墨線 約 1mm 平方을 2,3個所 切取하여 檢査하므로 鑑定資料는 僅小하며 또한 資料의 證據能力을 損壞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이다. 또 이 鑑別方法을 施行하는데 있어 당연히 提起되는 疑問으로서 同質의 墨의 文字인 경우이면 解膠速度의 測定으로서 鑑別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墨의 종류가 相異되는 墨文字인 경우 또 同質의 墨文字라도 墨의 濃度 즉 진하거나 묽거나한 경우 혹은 用紙가 相異한 경우에는 鑑別의 基準이 되는 解膠速度에 영향이 없느냐하는 것이다. 이 問題에 대하여 本研究을 실시한 菊地氏는 墨의 濃淡, 墨의 相異, 用紙의 相異가 解膠速度에 미치는 영향은 本研究의 測定精度的 範圍內에서는 無視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2절 잉크에 대하여

至今으로 부터 約 5천년前 先人들이 羊皮에 또는 紙面에 文字를 記載하기 위하여 사용한 液體가 後世에 이르러 東洋에서는 墨이 되고 西洋에서는 잉크로 된 것이다. 이 잉크란 말은 본래 文字 또는 符號를 表現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液體의 總稱인 것으로 10世紀頃에는 植物의 絞汁, 즉 탄닌酸과 鐵을 사용한 잉크가 發明되어 그 후 곧 沒食子酸과 鐵에

2절 잉크에 대하여 55

의한 잉크에 藍染料을 加하여 우수한 잉크를 製造한 것이다. 이 잉크가 불루블랙(탄닌酸)잉크의 最初로서 그 후 膠質化學의 應用으로 金일과 같이 美麗한 잉크가 出現된 것이다.

A. 잉크의 檢査

잉크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鐵製잉크와 色素잉크의 二種으로 大別되는 것이다. 이 중 色素잉크는 여러 色彩를 가지며 그 種類도 대단히 많은 것이다. 또한 檢査方法도 복잡하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고 文書잉크로서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鐵製잉크만 論하기로 한다. 主成分은 탄닌酸, 沒食子酸, 鐵化合物(黃酸第一鐵), 靑色色素 등으로 만들어진 黑藍色으로서 時日을 경과함에 따라 空氣中에서 점차로 酸化되어 墨變한다. 이 鐵製잉크는 다음 方法에 의하여 確認, 檢査하는 것이다.

1. 10% 蓚酸溶液에서 消色됨.
2. 10% 枸橼酸溶液에서 消色됨.
3. 鹽酸 또는 亞酸에서 消色됨.
4. 次亞黃酸암모늄溶液에서 暗赤色을 呈함.
5. 10% 加性소오다 溶液에서 暗赤色을 呈함.
6. 次亞鹽素酸소오다 및 稀鹽酸에서 消色됨.

B. 잉크文字의 作成時期

文書에 사용되는 鐵製잉크는 上述와 같이 탄닌酸 鐵製잉크로서 文字를 記載한 후 時日을 경과함에 따라 점차 黑色의 文字로 變하는 것이다.

이것은 잉크 중의 탄닌酸 또는 沒食子酸의 第一鐵鹽이 酸化되어 第二鐵鹽으로 變化하여 잉크文字가 墨變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鐵製잉크의 墨變化라고 하는 것이다. 이 墨變화와 時間과의 關係를 조사하여 作成時期를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다.

① 文字記載後 數日 以內的 것으로 잉크線上에 물을 滴下하여 吸取紙로 壓着하면 잉크는 吸取紙에 흡수되고 잉크線은 거의 消失된다. 이것

56 제 1권 제 9장 文書作成時期의 鑑別

은 탄닌酸 및 沒食子酸의 第一鐵鹽이 아직 第二鐵鹽으로 未變化한 때문이다.

② 文字記載後 數個月 以內的 것은 잉크線上에 물을 滴下하여 吸取紙로 壓着하여도 잉크線이 잘 消失되지 않는다. 이것은 탄닌酸 및 沒食子酸의 第一鐵鹽이 酸化作用에 의하여 물에 難溶性인 第二鐵鹽으로 變化하기 때문이다.

③ 文字記載後 7,8年을 경과한 것은 잉크線의 色度는 濃靑墨色을 呈하고 물에 不溶이다. 이것은 化學적으로 대단히 安定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鐵製잉크(탄닌酸 또는 沒食子酸잉크)는 特有的 墨變化를 惹起하므로 이 特性和 上述의 化學的 檢査에서 言及한 잉크色の 消失反應을 併用하여 잉크文字의 記載時期를 鑑別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잉크文字의 일부에 直徑 1mm의 毛細管을 사용하여 稀蓚酸溶液을 一滴, 滴下한 후 擴大鏡으로 鏡視하면서 잉크가 稀蓚酸溶液에 溶解하기 시작할 때의 時間을 타이마로서 측정한다. 이 測定値를 資料와 동일 조건에서 측정한 記載時期, 記載條件이 판별되어 있는 標準資料의 溶解速度와 比較對照하여 資料의 잉크文字의 記載時期를 鑑別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잉크文字의 記載時期는 溶解速度의 遲速에 의하여 鑑別되지만 用紙, 잉크의 品質, 文字記載時에 있어서의 잉크의 新舊度, 文書의 保管狀態, 混合잉크, 잉크의 量 등에 의하여 다소 影響을 받으므로 이러한 影響에서 오는 測定誤差도 計算에 넣고 鑑識하여야 한다. 그러나 코발트잉크(染料잉크)는 墨變化가 없으므로 記載時期를 鑑別하는 精確한 方法은 아직도 없는 것이다.

다음은 미첼(Mitscher)이 取扱한 잉크文字에 관한 事件例로서 英國의 어떤 집에서 聾은 提督이 作成한 文書를 相傳遺産으로서 數代前부터 家寶로 傳受하여 오고 있었다. 그러나 그 文書의 잉크色이 靑색이 되어 帶黃靑色으로 變하였으나 이것을 가지고 眞筆이 아니라고 疑心을 갖지는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博物館에서 우연히도 이와 똑같은 文書를 받

2절 잉크에 대하여 57

천하여 所藏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본즉 꼭 같았다. 自然 이 2장의 文書中에서 어느 것이 眞本이나의 문제가 대두되어 그 眞否는 鑑識의 對象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家寶로 傳受되어 오던 文書의 잉크는 普通 잉크(鐵製잉크)로서 作成된 것이 아니며 또한 그것은 原本의 寫眞石版에서 印刷된 模造品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다.

다음은 잉크文字의 相對的 作成時期에 관한 事件例로서 自己의 不正行爲로부터 발생한 金錢上的 缺損을 隱蔽하기 위하여 臺帳의 前年度分에 대하여 欺罔改記하려고 하였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잉크로서는 그 색이 연하므로 普通잉크에 墨汁을 가공하여 前年度에 記入한 같은 잉크 색으로 만들어 臺帳의 變造를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최근에 作成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1, 2年을 경과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그 臺帳의 記入部分이 결국 문제가 되어 鑑識의 對象이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漂白藥으로서 操作處理한 結果 그 臺帳의 記入部分이 問題되지 않은 부분은 전부 퇴색이 되었는데 이 問題된 記入部分만은 전부 퇴색이 되지 않았다. 이것은 普通잉크에 墨汁을 加工하였기 때문이다. 즉 墨汁의 主成分은 炭素粉으로서 漂白藥에 작용치 않고 殘留하므로 擴大鏡下에서는 一層 明瞭하게 鏡視되어 새로 記入한 부분이 變造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臺帳의 記入部分이 變造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墨汁의 主成分은 炭素粉으로서 漂白藥에 작용치 않고 殘留하므로 擴大鏡下에서는 一層 明瞭하게 鏡視되어 새로 記入한 부분이 變造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臺帳의 記入部分이 變造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즉 墨汁의 主成分은 炭素粉으로서 漂白藥에 작용치 않고 殘留하므로 擴大鏡下에서는 一層 明瞭하게 鏡視되어 새로 記入한 부분이 變造된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제 2 편 印影鑑定

印章은 中國의 三代(夏, 殷, 周—西紀 약 2,200年前) 때 이미 存在한 것으로서 周禮에서는 璽節이라고 하는 것을 印章이라고 하나 五雜俎에서는 三대의 信인 符節(竹木을 兩分하여 그 하나를 相對方에 交付하고 나머지 하나는 이쪽이 保管하였다가 後日 이것을 合하여 符札로 한 것)만을 指稱한 것으로 아직 이 時代에는 璽는 없었다고 하는 것이다.

秦이 天下를 統一한 후 印制가 定하여지고 天子의 印을 璽(王子는 國土를 管掌하므로 土字를 使用하였다. 璽는 音符이며 土를 玉으로 代替한 것은 玉을 印材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라 하고 諸侯 이하 萬民의 것은 印이라고 하였다. 印章에 使用되는 書體도 時代의 變遷에 따라 다음의 八體로 區分된다.

1. 大篆……周의 太子 籀가 만들었기 때문에 籀文이라고 하며 또는 蝌蚪文 혹은 古文이라고도 함.
2. 小篆……秦의 丞相 李斯가 大篆을 省改한 것으로 今日的 篆書라는 것을 말함.
3. 刻符……符節에 鑄刻한 것으로 今存하는 文字는 小篆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4. 蟲書……鳥蟲書라고도 하며 文字의 劃首를 鳥 또는 蟲의 形態로 象徵한 것.
5. 摹印……漢時代에 印章에 鑄刻한 文字로서 繆篆이라고도 稱하는 것이다.
6. 署書……榜書로서 즉 額字 혹은 標牌字 等.

60 제 2 편 印影鑑定

7. 書……兵器의 銘文을 말함.

(以上中 刻符, 摹印, 署書, 及書는 小篆과 大篆가 없다는 것이다)

8. 隸書……小篆의 筆畫를 쓰기 쉽게 한 것으로 古隸라고도 함.

또 名稱도 璽, 印, 判, 印形, 印判, 印鑑, 圖書, 符節, 押字, 押手 등 여러가지로 呼稱되는 것이다. 印章은 姓名을 尊重하고, 姓은 祖宗을 명백히 하고 이름은 家世를 顯出한다는 것으로 重視되어 온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歐美各國과는 달리 眞實의 木人이 署名하여도 捺印을 하지 않으면 署名을 認定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筆蹟보다 捺印을 重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

대저 印章은 印類 및 印影을 말하는 것으로 印類는 印影을 顯出하는데 要하는 文字 其他의 符號를 彫刻한 物體를 말하며, 印影은 一定人이 一定한 事項을 證明하기 위하여 物體上에 印類로서 顯出한 文字 其他의 符號의 影跡을 말한다.

捺印도 社會上 및 法律上 重要性을 가지므로 印章으로 解釋되고 있다. 左右間 우리가 日常 사용하고 있는 印章은 公法上 및 私法上(특히 經濟上)責任의 表示로서 法律上의 効력을 發生하므로 印章을 둘러싸고 야기되는 犯罪의 手法도 巧妙하며 이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犯罪被害 또한 많은 것이다.

따라서 印影에 關하여 爭訟이 야기되는 것은 非—非再하며 또한 이 경우에는 鑑定에 의하여 그 眞偽를 決定하는 수 밖에 없다. 그러나 印影은 普通 9~15mm 정도의 小輪廓內에 있는 字畫로서 後述 印影의 變化性에서 論하는 바와 같이 捺印할 때마다 약간씩 變化하므로 肉眼으로 이것을 鑑別한다는 것은 至難한 것이다.

殷或 鑑別하였다고 하여도 이것을 充分히 證明하여 訴訟關係者를 首肯케 한다는 것도 또한 곤란한 것이다.

따라서 印劃의 擴大相似劃에 대하여 檢査를 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印影鑑定에 있어서 有利한 條件으로는 完全한 模造印判을 製造

제 2편 印影鑑定 61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래 印判은 金, 銀, 銅, 水晶, 蠟石, 瑪瑙 등의 鑲物質, 拓植과 같은 木質, 혹은 象牙, 犀角, 鹿角, 水牛角, 牛角 등의 動物質 등에 일일이 鐫刻을 하는 것으로 如何한 名工이라도 同一의 印判을 2個 以上 鐫刻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것이다.

즉 入念精密히 彫刻하여도 同一의 僞印은 질대로 製作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각 印判은 全部 특징을 具有하고 있으며 또한 그 印影이 각기 특징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 특징 中에는 彫刻者의 意思에 基因하는 것 또는 유연히 彫刻된 것으로 再次 製造할 수 없는 貴重한 特徵이 內包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微細한 특징은 擴大印圖으로서만 明確히 現出되는 것이다.

제 1장 印影의 僞造手法

1절 印鑑盜用

普通은 印章管理의 소홀 또는 委託, 信任 관계를 基礎로 한 印章의 受託者가 委託者(被害者)의 意思에 反하여 不正使用하는 手法이 일반적인 것으로서 소위 印鑑盜用인 것이다. 이에 使用된 印影은 眞正한 것이다.

2절 印鑑手刻

他人의 印類를 僞造하는 手法으로 그 手段은 手刻인 것이 보통이다. 일반적으로는 眞正의 印影을 印判業者에 의뢰하여 手刻하는 경우와 때에 따라서는 犯人自身이 手刻하는 例도 있는 것이다. 印判業者는 道義의으로 같은 印類를 手刻하지 않으며 說或 同一의 印類를 手刻하는데 如何한 注意와 努力을 傾注한다하여도 眞正한 印類와 똑 같은 印類를 手刻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것이다. 보통 手刻의 方法으로서 眞正의 印類를 模倣手刻하는 경우와 透視의 手刻方法으로서 즉 半透明紙에 押捺된 眞正印影을 手刻基材에 印影面을 뒤집어 貼着시킨 후 透視되는 印影面을 그대로 精巧히 手刻하는 것이다. 이 方法은 비교적 精密한 方法인 것이나 眞正印影의 手刻木에 貼付되는 紙面의 伸縮度 및 手刻刀의 印字劃線에의 追刻의 誤差 등으로 眞正의 印影대로 手刻한다는 것은 不可能한 것이다.

3절 凸版僞造

다음은 眞正(實印)한 印影을 實物대로 攝影하여 凸板 印刷用의 金屬

4절 印影轉寫 63

板에 引畫한 후 化學藥品(例컨대 黃酸銅 및 鹽化第二鐵)으로서 그 凸板을 酸化, 腐蝕시켜 眞正의 印影과 같은 印顫를 만드는 것으로 透視의 手刻方法 보다 한층 精巧한 方法인 것이다. 그러나 이 方法으로 만들어진 印影과 眞正印影을 比較顯微鏡 또는 擴大寫眞에서 比較檢査하여 보면 肉眼으로는 一見 同一한 印影으로 認見 되지만 많은 相異點이 發見되므로 이 方法에 의하여도 전혀 同一한 印影을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金屬板이 化學藥品에 의하여 酸化, 腐蝕反應 途中 필요 이상으로 腐蝕 또는 반대로 腐蝕이 불충분하다든지 하여 腐蝕度에 基因되는 影響으로 腐蝕印顫의 印字劃線에 差異를 招來하는 때문이다.

4절 印影轉寫

A. 眞正한 印影上에 세로관 또는 美濃紙, 세루로이드 등으로 덮어 押着하여 세로관, 美濃紙, 세루로이드 등에 印影을 寫影시켜 다시 目的의 偽造文書에 轉寫하는 手法을 印影의 轉寫라고 하는데 押捺直後의 印影으로서 印朱가 아직 紙上에서 乾燥固着하지 않은 때 이 方法으로서 간단히 轉寫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 方法에 의한 印影轉寫는 眞正의 印影을 그대로 轉寫하기 때문에 거의 眞正의 印影과 同一하므로 肉眼으로도 一見 同一印影으로 誤認될 危險性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轉寫하기 때문에 印影의 印字劃線은 전체적으로 흐리며 平板上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凸板狀인 印顫의 押捺과는 많은 差異를 야기하는 것이다.

B. 文書, 繪畫 등에 押捺된 印影이 前述과 달리 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乾燥固着하는 경우에 轉寫하는 方法으로서 이것은 手巧의인 方法인 것이다. 즉 乾燥固着된 印影의 印字劃線 및 輪廓의 印朱部分에 例컨대 성냥, 바늘끝 등으로 蓖麻子油 또는 오리브油 등을 塗布하여 연하게 하면 곧 押捺한 朱印狀態로 되는 것이다. 이 때 稀薄한 젤라틴 또는 阿膠의 水溶液을 塗布하여 乾燥시킨 白紙로 덮어 白紙 위를 다리미로 타지 않을 정도의 溫度下에서 適當時間 다리면 印朱의 印影이 白紙의 젤라틴 또는 阿膠에

64 제2면 제1장 印影의 偽造手法

부착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再顯出코저 할 때에는 사용하는 目的物에 稀薄한 젤라틴 또는 阿膠水溶液을 塗布한 후 轉寫盜印한 白紙를 덮고 역시 다리미로 다리면 原印影과 같은 印影을 轉寫할 수가 있는 것이다. 만일 이때 轉寫된 印影에 印朱가 부족한 경우에는 印朱를 前과 같이 성냥 또는 바늘끝으로 蓖麻子油와 印朱를 混合한 것으로 부족한 印影部分을 補畫하여 완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方法으로 乾燥固着된 印影을 特定物上에 轉寫할 수 있으나 印字劃線의 伸縮部位 및 平板上의 印朱附着 등으로 眞正한 印影과는 많은 差異를 야기하는 것이다.

5절 寫眞轉寫

眞正의 印影을 實物대로 撮影, 2回轉寫하여 實物과 조금도 相違 없는 印影을 만드는 것으로 이것은 形狀이 천연 동일하므로 鑑識에 있어서 後述의 形態를 주로 하는 鑑識法 즉 擴大寫眞에 의한 方法은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印影의 印朱가 平板上에 附着하는 點 및 轉寫에 사용된 媒介物의 成分檢査에 의하여 이것을 식별하는 것이다.

6절 原紙에 의한 偽造

A. 謄寫用原紙上에 美濃紙 등 半透明紙에 押捺된 眞正의 印影을 놓고 印字劃線 및 輪廓 그대로 押筆하여 謄寫原紙에 顯出된 押捺跡에 따라 眞正의 印影과 비교하면서 鐵筆로 鮮明하게 印字劃線 및 輪廓을 劃하고 原紙上에 印朱를 塗布하고 손끝 또는 천(布地)으로서 문질러 偽造印影을 顯出하는 것이다.

B. 또 위와 같은 方法으로 毛筆原紙를 사용하여 特定의 書類에 偽造 印影을 만드는 方法도 있으나 이것은 비교적 특별한 技術을 요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주의하여 觀察하면 印影의 印朱가 平板上에 附着하는 形態와 印影의 謄寫用 原紙는 鐵筆로 쓰여 있기 때문에 鐵筆의 細線이 발

7절 印影描寫 65

견된다. 특히 擴大하여 보면 한층 명료히 現出되는 것이다.

7절 印影描寫

대단히 幼稚한 方法으로서 色鉛筆 또는 그림물감으로 印影을 描寫하는 경우가 있으나 印朱의 色調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여 觀察하면 용이하게 발견되는 것이다.

제 2 장 印影의 變化性

印影은 印顆가 埋蔽되어 있다든지, 印顆의 印朱附着이 過剩 또는 不足하다든지 혹은 押捺의 強弱, 받침(예컨대 磗子板, 고무板, 手掌) 등의 種類, 條件에 따라 押捺할 때마다 상당한 變化를 야기하는 것이다. 印字機의 活字는 用紙에 대하여 언제나 物理的으로 거의 同條件이므로 打字된 印字는 形態에 있어서 거의 變化를 야기하지 않는다.

印影도 이와 같이 押捺에 의하여 變化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용이하게 鑑別할 수 있지만 印影은 同一한 印章이라도 押捺條件에 의하여 變化하는 것이다. 또 印影은 印顆에 의하여 顯出되는 平面的인 劃線群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로부터 押捺條件을 識別한다는 것은 곤란한 것이다. 印影은 押捺條件에 의하여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變化하는 것이다.

1절 押捺壓의 影響

押捺壓이 強하면 일반적으로 印影의 字劃線은 肥大하며 押捺壓이 弱하면 字劃線은 전체적으로 가늘며 또 一部 缺損되는 수도 있다. 그러나 이 押捺壓은 印顆의 中心部에 대한 것으로 사람에 따라서는 印顆의 右側 또는 左側에 혹은 上下側에 押捺壓의 強弱에 따라 印影의 字劃線이 부분적으로 肥大 또는 가늘게 되며 혹은 缺損되는 部位가 顯出되는 것이다.

2절 印朱의 影響

印顆의 印朱附着의 過剩 또는 不足에 따라 印影의 字劃線은 肥大 또는 가늘게 되며 혹은 一部가 缺損하여 顯出된다. 또 印顆에 印朱가 埋蔽

4절 押捺用紙의 影響 67

되어 있는 경우(이것은 印章을 오래 사용한 채 印顫를 掃除하지 않은 경우에 야기됨)에는 印顫의 字劃線 以外の 部分도 紙面에 壓着되므로 埋藏된 部位의 字劃線이 肥大 또는 字劃線 이외의 部分이 顯出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3절 押捺臺(받침대)의 影響

印顫를 用紙에 押捺할 때 그 用紙의 받침을 押捺臺라고 하는데 이 押捺臺의 種類에 따라 顯出되는 印影도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다. 그 押捺臺가 硝子板, 金屬板, 木板 등의 硬調面인 경우에는 印影은 字劃線이 가늘며 혹은 缺損되는 部位도 顯出되며 이에 反하여 押捺臺가 고무板, 紙本(雜紙, 文書綴), 手掌(손바닥) 등의 軟調面인 경우에는 印顫가 紙面에 충분히 密着되므로 印影의 字劃線은 肥大하며 肉眼으로는 실제 보다 크게 보이는 것이다.

4절 押捺用紙의 影響

印影은 押捺되어 있는 用紙의 紙質, 保存狀態에 따라서 다소 伸縮하는 경우도 있으나 鑑識에 關한 정도의 영향은 야기되지 않는다.

제 3 장 印影鑑識法

하나의 印顫에서 顯出된 印影이 同一한 印章인데도 불구하고 相違된 印影이라고 鑑別한 事例가 종종 있는 것이다. 이것은 印影의 變化를 잘 못 判斷한데서 야기된 것으로 印影의 變化는 印影鑑識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며 주의하여야 할 點이다. 즉 實印印影이라도 捺印할 때마다 꼭 同一한 狀況에서 押捺할 수는 없기 때문에 多少 相違되므로 이 押捺條件에 의한 變化와 前述의 精巧한 偽造印影과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 또 巷間에서 簡易한 肉眼의 檢査를 施行하고 있으나 이것은 事務의 特殊性과 業務上의 便宜에 의한 制限된 범위 내에서의 方法인 것으로 精巧한 偽造印影은 肉眼으로는 아무리 注意를 하여도 그 僅少한 差를 발견한다는 것은 곤란하며 또한 押捺變化의 多樣性인 印影을 肉眼의 檢査로서 鑑別한다는 것은 부적당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方法이 採用되고 있는 것이다.

1절 比較顯微鏡에 의한 方法

이 方法은 2個의 印影이 同時에 等倍率로 擴大되어 그 擴大像이 1個의 接眼렌즈에 의하여 同一 視野內에서 비교가 되는 장치이다. 이 장치는 2個의 對物렌즈에 投射되는 2個의 物體가 半分되어 接眼렌즈에는 2個의 半分像이 1個의 像으로서 合致되어 鏡視되는 것이다. 즉 同一印影이면 그 右半分の 印影과 左半分の 印影이 合致하여 1個의 완전한 印影像이 合成되는 것이다. 따라서 윤곽이 合致하지 않는다면 印字劃線이 合致하지 않는 불완전한 印影像은 相異한 印影인 것이다.

4절 擴大寫眞에 의한 檢査 69

2절 擴大投影器에 의한 檢査

印影을 發射照明에 의하여 핀트그라스 위에 擴大投影시켜 그 윤곽과 印字劃線의 形態를 檢査하는 器具로서, 擴大投影의 倍率は 10~25倍로 印影의 크기에 따라 任意의 倍率로 擴大하여 檢査할 수가 있는 것이다.

3절 擴大原板에 의한 透視의 檢査

이것은 檢査한 2個 또는 그 이상의 印影을 同一한 條件下에서 等倍率로 擴大攝影하여 原板을 만들고 다시 暗室內에서 一方의 原板과 生原板을 密着露光陽畫의 原板을 만든다. 이 陽畫原板의 印影을 겹쳐 透視하여 兩印影의 印字劃線, 輪廓의 合致與否를 檢査하는 것이다. 이 檢査에서 擴大實印原板과 透視하여 印字劃線 또는 輪廓의 어느 部位든지 合致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印影은 相異한 것이다.

4절 擴大寫眞에 의한 檢査

A. 比較顯微鏡의 原理와 같은 方法으로서 즉 2個의 印影을 同一한 條件下에서 撮影, 等倍率로 擴大寫眞을 만들어 각기 半分하여 하나의 右半分の 印影과 他方의 印影에서의 左半分の 印影과를 接合 比較하는 것이다. 마치 比較顯微鏡에서 鏡視比較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된다. 즉 1個의 完전한 印影으로서 兩印影의 印字劃線 및 輪廓의 合致與否를 檢査하는 것이다. 이 檢査에서 實印印影과 印字劃線 및 輪廓이 合致되지 않는 경우에는 比較顯微鏡에서 말한 바와 같이 相異한 印影인 것이다.

B. 이 方法은 A 方法과 같은 것으로서 寫眞 위에 作成하는 方法으로 즉 2個의 印影을 2枚의 乾板에 各己 等倍率로 擴大攝影하고 다음에 暗室內에서 印畫紙의 位置를 規定한 후 印畫紙上에 一方의 原板으로 適

70 제 2편 제 3장 印影鑑識法

正露出의 1/2만 露光하고 다음에 他方의 原板을 가지고 또 나머지 印畫紙上에 1/2만 露光시킨 다음 現象을 하면 1個의 完전한 印影像이 合成되는 것이다. 이 合成된 印影에 대하여 兩印影의 印字劃線 및 輪廓의 合致與否를 檢査하는 것이다.

5절 幾何學的計測法

A. 作圖法

이것은 比較하는 兩印影의 擴大寫眞에 대하여 正確한 幾何學的區劃을 作圖하여 微細한 比較부위를 많이 만들어 그 부위를 서로 精密히 比較 대조하여 印字劃線 및 輪廓의 同一與否를 檢査하는 方法이다. 그러나 比較하는 두 印影의 擴大寫眞에 區劃線을 製圖할 때 印字劃線 및 輪廓에 대하여 어느 部位를 基準으로 하여 製圖할 것인가는 각 印影에 따라 適正히 定하여야 할 것이다. 例컨대 檢査할 兩印影을 同一한 條件下에서 撮影, 等倍率로 擴大한 印影寫眞을 가지고 첫째 擴大印影寫眞의 印影의 邊輪의 中心을 求하여 이 中心點에서 컴파스로 그 윤곽에 沿해서 圓을 그리고 圓의 中心을 통과하여 縱橫으로 直角의 十字線을 그리고 圓을 45°씩 8分하는 2線을 그 正中間에 劃하고 圓과 相接되는 點을 이어 正四角形을 만들고 正四角形의 十字線에 平行하여 一定한 間격의 縱橫線을 여러 개 그리는 것도 한 方法이다. 이와 같이 作圖한 兩印影에 대하여 相互의 圓의 半徑, 印字劃線의 位置, 길이, 間격, 등을 測定 比較檢査하는 것이다. 이 方法은 作圖上의 細心한 注意, 印影에 따라 中心位置의 결정에서 오는 誤差 등으로 실제로 불편한 點이 많은 것이다. 따라서 대체적으로 다음 例와 같이 透視方眼板을 使用하고 있다.

作圖法の 檢査例

甲. 作 圖

甲第二號 및 甲第五號印影의 擴大印畫를 作成하여 다음 作圖를 行함.

1. 縱 劃

1. 有劃의 左端, 縱劃의 中央部를 通過하는 直線 1을 劃함.
2. 同劃右方에서 第二劃의 縱劃部의 左側에 沿하여 直線 2를 劃하고 下方은 延長함. 그러던 下方에 있어서 同一劃의 末端을 통과함.
3. 同劃 右端의 縱劃의 中央을 통과하여 直線 3을 劃하고 이것을 延長함. 그러던 下方三橫劃은 右端에 가까운 部位에서 3을 貫通함. 또 輪廓斷線의 末端 C는 僅少하나마 3의 右方으로 逸出함.
4. 野劃의 土劃部 및 木劃의 左側을 통과하는 直線 4를 劃하고 上方으로 延長함. 그러던 大劃 및 野劃에 接함.
5. 木劃의 縱劃의 中央部를 貫通하는 直線 5를 劃하고 이것을 延長하면 大劃 및 野劃을 거의 完全히 2等分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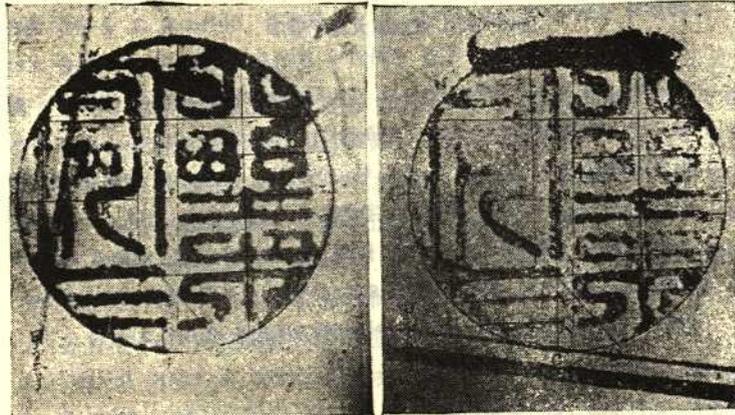


그림 13. 某貨金事件의 印影檢査

(a) 甲第二號印影

(b) 甲第五號印影

II. 橫 劃

1. 有劃 第四劃의 上側을 통과하는 直線 一을 劃하고 右方으로 延長함. 그러던 大劃의 第二, 三劃 水平部의 下側을 통과함.
2. 野劃의 田劃部 第二橫劃의 中央을 통과하는 直線 二를 劃하고 右方으로 延長함. 그러던 予劃 第三劃部의 中央을 通過함.
3. 同劃 土劃部의 第一橫劃의 中央을 통하여 直線 三을 劃하고 左方으로 延長함. 그러던 有劃中의 一角을 통과함.
4. 同劃終劃의 中央을 통하여 直線 四를 劃함.
5. 木劃 第一劃의 中央을 통하여 直線 五를 劃함.
6. 三劃 第一劃의 下側을 통하여 直線 六을 劃하고 右方으로 연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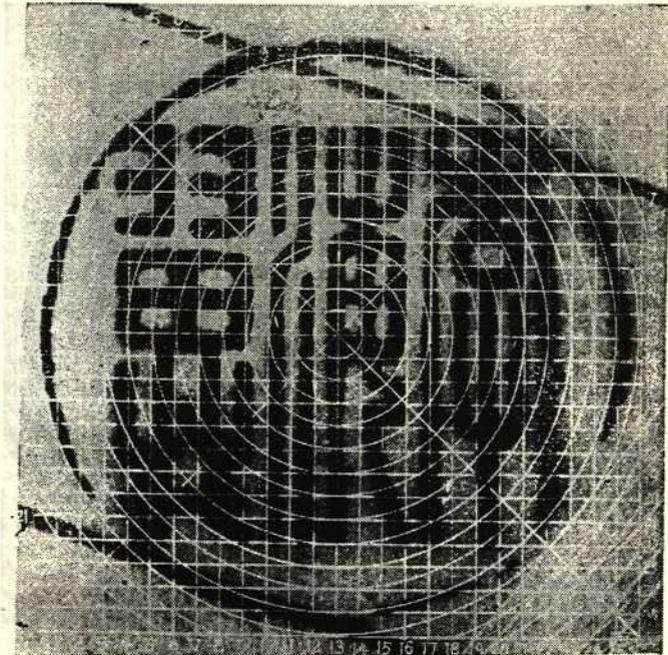


그림 14. 透視方眼板을 使用하여 引畵한 兩印影의 比較檢査 (a)

그러면 木割 第三, 四割의 水平部의 上側을 通過함.

- 7. 同割 第二割의 中央을 통하여 直線 七을 劃함.
- 8. 同割 第三割의 中央을 통하여 直線 八을 劃함.

III. 斜 割

- 1. 3線과 六線이 交叉되는 p點에서 輪廓斷線의 一端 D點에 向하여 斜直線 6을 劃함. 그러면 木割 第三割의 左方 第二의 曲線部에 接함.

IV. 圓

- 1. O點을 중심으로 하여 輪廓의 中央을 통하는 N圓을 劃한다. 그러면 輪廓은 거의 正確한 圓周를 形成하다고 推定할 수 있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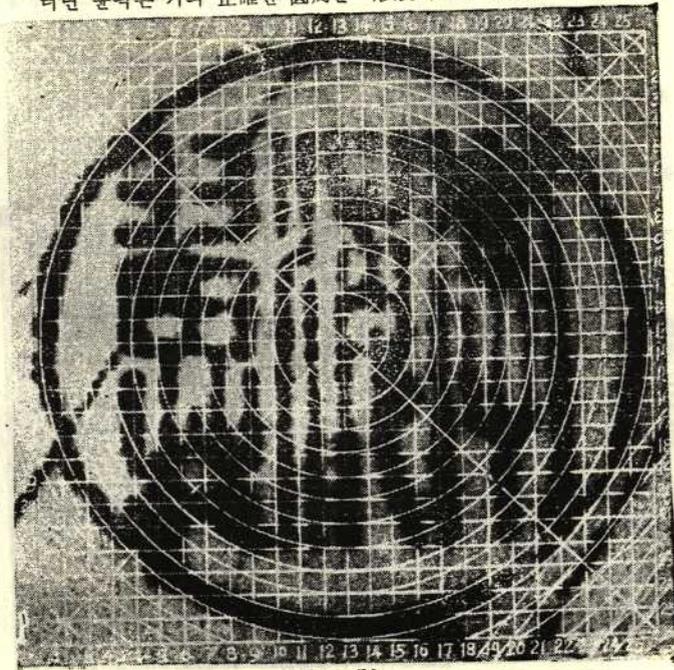


그림 14. (b)

이다.

乙. 對 照

作圖된 兩圖를 對照컨대 그림 13 (a)中的 各 構成割과 그 作圖와의 關係는 同圖(b)中的 構成割과 作圖와의 關係와 相互合致한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相異되는 點도 認見할 수 있지만 이것은 押捺當時 印判面의 印朱의 過剩 및 不足等에 基因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特徵의 一致

直線 三이 左方에 있어서 圓과 相交되는 點의 上方은 輪廓의 毀損을 推測케 함. 그러나 交叉點의 약간 上方 部位에 특징이 있는데 이것을 A라고 命名함. 直線 1과 六과는 圓周 B에 있어서 거의 相交되고 있으며 兩圖는 輪廓의 下部 C D間에 缺線을 만들고 그 거리는 同一한 것이다. 上記의 符號의 合致는 兩印影의 一致를 證明하는 것이다.

B. 透視方眼板에 의한 方法

① 前述의 製圖를 하지 않은 擴大印影寫眞 위에 透視方眼板(透明한 硝子板 또는 세루로이드와 같은 板에 方眼線을 製圖한 것)을 놓고 印影의 字劃線의 位置, 길이, 間隔, 輪廓 등에 대하여 兩印影의 異同與否를 비교 檢査하는 것이다. 즉 作圖 대신에 작도를 加한 투시방안판을 사용하여 上述의 불편한 點을 補完한 것이다. 이 투시방안판은 鑑定對象物인 印影의 矩形, 圓形, 橢圓形 등 形態에 따라 이에 適正한 여러 形態의 透視板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② 다음은 擴大印影寫眞을 만들 때에 同時에 투시방안판을 使用하여 印畫紙에 印畫하면 마치 작도한 印影을 寫眞으로 攝影한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작도의 불편을 덜고 만든 擴大印影寫眞으로 兩印影의 異同을 比較檢査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림 14)

제 4 장 沒入印影의 顯出方法

署名捺印의 경우, 印影의 일부를 姓名의 末字에 또는 대부분을 姓名全體에 걸쳐 아무데나捺印하는 것을 習慣으로 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이다. 특히 印影偽造를 防止하기 위하여 또는 偽造印影의 發각을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加一層 깊이 文字의 위에 押捺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이 결과 印影의 일부가 文字에 沒入되어 疑心이 되는 部位가 公교롭게 顯出되지 않는 경우 또는 文字에 沒入되는 部位가 심하기 때문에 僅少한 印影部分만을 顯出하는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鑑識問題가 提起되었을 때에는 文字에 沒入되어 顯出된 나머지 印影部分만으로는 精確한 對照檢査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缺點을 除去하는 즉 文字內에 沒入된 印影을 顯出하는 補完作業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墨色文字上에 沒入된 경우의 印影은 肉眼으로서도 잘 보이지 않으며, 또한 寫眞乾板에도 感光되지 않는다. 그러나 印朱色이 墨色上에 存在하는 것은 또한 사실인 것이다. 이 점에 대하여 日本 警視廳의 金澤重威, 宮地廣兩氏는 光學的處理로서 文字에 沒入된 印影의 顯出方法을 考案하여 이를 解決하였다. 즉 文字上에 沒入된 印影을 顯出하여 印影의 全形을 觀察할 수 있게 하였다. 兩氏의 顯出方法은 대략 다음과 같다.

1절 金澤式 顯出方法

이 方法은 약간 복잡한 方法으로서 그 대요는 먼저 文字上에 위치한 印影을 文字와 같이 撮影하여 原圖를 作成하고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處理를 하는 것이다.

76 제 2편 제 4장 沒入印影의 顯出方法

1. 全整色乾板과 赤色필타를 사용하여 原圖를 複寫하고 第1原板을 제작함.
2. 푸르세스乾板을 사용하여 第1原板의 경우와 같이 同一焦點距離로서 原圖를 복사하여 第2原板을 제작함.
3. 푸르세스乾板을 사용하여 第2原板에 密着 露光, 이것을 현상하여 透明陽暈幻燈板을 만들어, 이것을 第3原板으로 함. 여기서 第1原板과 第3原板을 대조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 (a) 雙方은 크기가 同一함.
 - (b) 一方은 左文字이고 他方은 右文字임.
 - (c) 一方은 陰畫이고 他方은 陽畫임.
4. 다음에 第1原板과 第3原板의 膜面과 膜面의 두 印影을 精確히 接친 다음 周圍의 接친 部分을 스킷치테프로 貼着, 고정시켜 이것을 第4原板으로 함. 이것을 透視하여 보면 두 印影은 3項의 (a), (b), (c)의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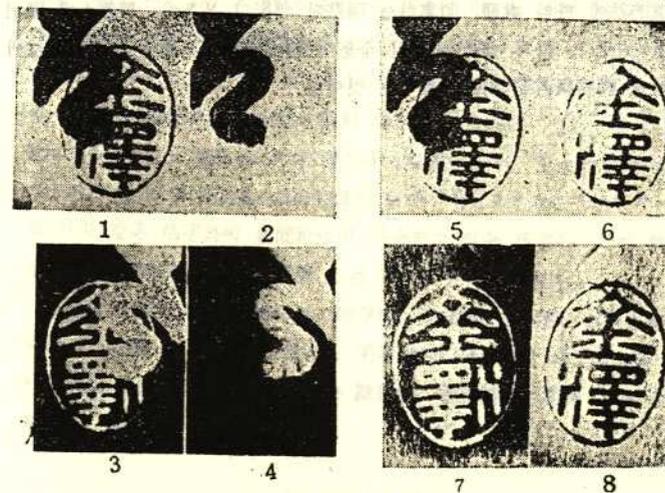


그림 15. 沒入印影의 顯出寫眞

1. 第1印畫 2. 第2印畫 3. 第1原板 4. 第2原板
5. 第3原板 6. 第4原板 7. 第5原板 8. 完成

2절 宮地式 顯出方法 77

전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그 겹친 결과는 완전한 印影으로서 볼 수 있는 것이다.

5. 第4原板을 原圖로 ฟู로세스乾板을 사용해서 擴大複寫(透視撮影)를 하여 第5原板을 만든다. 이와 같이 만든 第5原板으로부터 印畫를 만들어 내면 印影部位의 墨色部分이 연하여져 印影의 全形이 顯出되는 印畫를 얻는 것이다.

2절 宮地式 顯出方法

이 방법은 비교적 간단한 것으로 文字上에 沒入된 印影을 全整色乾板에 의하여 스크린으로 조절하면서 撮影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全整色乾板에 의하여 撮影할 때 먼저 綠色의 스크린을 사용하여 20秒 露出한 다음에 赤色의 스크린으로 바꾸어서 7秒間 露出한 후 이것을 보통의 寫眞方法에 따라 處理, 印畫하면 隱蔽된 印影의 부분이 黑色上에 顯出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印影의 全形이 顯出되면 上述의 印影鑑識法에 의하여 異同與否를 對照檢査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제 5 장 印刷活字

印刷活字에는 種類, 書體 등에 差異가 있으므로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1절 印刷活字의 種類

現在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活字는 在來의 號式과 포인트식의 2種의 活字規格이 있는데, 號式의 活字는 最大의 初號에서 1號, 2號로 점차 작아져 最小의 7號 까지 8種類가 있고 각 號數의 活字의 크기와 號數關係는 等比로 되어 있지 않고 初號活字는 4號活字의 3倍, 2號活字는 5號活字의 2倍 또 5號活字는 7號活字의 2倍로 되어 있으며 이 活字中에서는 5號活字, 6號活字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에 포인트식의 活字는 1886년에 美國에서 규격을 통일한 것으로 현재로서는 世界各國이 포인트식의 活字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즉 最大의 42포인트 活字로 부터 最小의 4포인트 까지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6, 8, 9, 10, 12포인트 등이며 1포인트는 1/16인치이다. 또 이와 같은 活字外에 新聞社에서 사용되고 있는 活字는 각기 特別한 活字로 一定하지 않으며, 新聞 또는 扁平活字라고도 한다.

다음에 印刷活字의 書體에는 明朝體, 清朝體, 宋朝體, 教科書體, 고딕(Gothic)體 등 數種類가 있으나 明朝體와 고딕體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특수한 것으로는 隸書體, 篆書體, 行書體 등도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2절 印刷의 種類

원래, 印刷라는 것은 잉크로서 文字 또는 그림을 하나의 原板에서 紙

2절 印刷의 種類 79

類 또는 기타 物件에 轉寫하는 것으로서 印刷活字를 鑑別하는데도 密接하므로 印刷方法을 要술하면 다음과 같다.

A. 凸版印刷

印刷은 보통 凸版으로서 木版은 물론 活版印刷가 凸版印刷의 代表적인 것이다. 즉 凸版印刷라는 것은 인쇄부위가 突出하여 그 部分에 잉크가 附着되어 紙面에 전사되는 방법으로서 인쇄부위가 突出되어 있으면 凸版인 것이다. 또 鉛版印刷은 活版의 複製版에 의한 것이며 新聞이나 一般單行本의 印刷은 活版으로 부터 紙型에 의한 鉛版을 만들어서 印刷하는 鉛版印刷인 것이다.

B. 凹版印刷

凹版은 주로 金屬의 平面에 彫刻刀로서 手刻한다든가 또는 化學藥品의 작용으로 酸化, 腐蝕시켜 文字, 繪畫 등을 顯出시키고 잉크를 手刻 또는 腐蝕시킨 凹線에 注入하고 부근에 附着한 잉크를 닦은 후 이 凹版을 紙類 등에 壓力을 加하여 印刷하는 方法이며 代表的인 것으로는 紙幣가 있다. 지폐를 擴大鏡으로 鏡視하여 보면 잉크가 浮刻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새 紙幣의 경우는 手指로 接觸하여 보아도 잉크의 凹凸를 感覺할 수 있는 것이다.

C. 平版印刷

平版은 化學作用을 應用하여 특수한 石(돌), 金屬 또는 硝子 등의 平面上에 필요한 繪畫, 文字 등을 顯出하여 製版한 것으로 印刷版은 凹凸 없이 平面인 것이다. 이 平版印刷로는 石版印刷, 윤세트印刷, 코로타이프印刷 등이 있는 것이다.

이 平版印刷가 간혹 高度한 偽造方法에 사용되는 예가 있는 것이다. 즉 眞本을 撮影, 寫眞製版한 것은 一見 眞本과 대단히 類似하나 印刷技術의 相異와 紙質의 檢査, 잉크色調의 化學的試驗으로 그 差異를 鑑識

80 제2편 제5장 印刷活字

하는 것이다.

3절, 印刷活字의 鑑識

印刷活字의 鑑別은 印影의 鑑識法과 거의 같은 것으로 擴大投影器 또는 擴大寫眞에 의하여 印字의 특징을 비교 검사하는 것이다. 印影의 變化性에서 달한 바와 같이 印刷活字는 物理的으로 同條件에서 印刷되므로 印字의 형태에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印影鑑識과 相異되는 點은 印刷活字에 있어서는 活字의 疵跡(흔), 磨滅狀態를 특히 注意하는 점이며 印影과 같이 형태의 異同을 中心으로 하여 鑑識하는 것과는 相異한 것이다.